

농업 · 농촌기본법의 법체계와 시행상의 문제점

황적인

(한국농업법학회 회장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Legal System Problems on Basic Law of Agriculture and Rural Villages

Huang, Seok-In

President, Association of Agricultural Law

(Emeritus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Member of National Academy, ROK)

적 요

우리나라에는 원래 「농업기본법」(1967. 1. 16. 法律 1871호)이 있었는데, 이 법률이 너무 낡고 시대에도 맞지 않았고, 또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 4. 7.)도 제정된지 오래 되어 특히 후자의 법률의 주요 조문을 옮겨서 「농업 · 농촌기본법」(1999. 2. 5. 법률 5758호)이 새로 제정되게 되었다. 새로 제정된 이 법률은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사항을 막아하여 규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의 청사진이며 하나의 구도이다. 우리나라 현행 47개 농업법률의 모법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농업 · 농촌기본법」이 중요하며, 농업법연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농업 · 농촌기본법」의 ① 48개 개별조문의 성립경위, ② 개별조문의 의미 ③ 그 조문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법률과의 관계 ④ 개별조문에 관련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⑤ 개별조문을 이해를 돋기 위하여内外국의 실물경제의 현황, ⑥ 일본의 「식료 · 농업 · 농촌기본법」과의 비교를 하고 있다.

요컨데 이 논문은 우리나라 농업 전반의 구조와 법체계를 밝히고 이 법률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농업 · 농촌기본법」의 개별조문을 시행하는 시행법이 아직 없는 것도 있고 그 시행법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법률상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서술한다.

I. 서론

「농업 · 농촌기본법」은 한국 농업의 발전의 기초이고 설계도이며, 출발점을 이루는 법률이다. 기본법이라고 하면 기본 원칙만을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법률은 단순히 기본원칙을 열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업 발전에 필요한 모든 한국농업의 구도를 그리는 법률인데 그 중요성이 있다. 이제 이 법의 조문의 의미와 성립과정 그리고 농업 실물과의 관계를

II. 農業 · 農村基本法의 法體系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國家와 國民經濟의 基盤인 農業과 農村의 發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農業 · 農村이 나아갈 방향과 國家의 政策方向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1조의 조문은 1998. 7. 14. 기본법작업반의 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이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와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고, 농촌이 산업과 자연이 조화된 국민공유의 삶의 공간으로서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보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 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법령정비협의회(3차 회의 : 1997. 12. 26. 농림부 대회의실)에서는 더 간단하게 조정하도록 요청하여 보다 축소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것이다.

第2條 (基本理念) 農業¹⁾은 國民의 食糧을 안정적으로 供給하고 國土環境保全에 이바지하는 등 經濟的·公益的 기능을 수행하는 基幹產業으로서 國家經濟의 調和로운 발전의 基盤이 되도록 하고, 農業人²⁾은 自律과 創意를 바탕으로 다른 產業從事者와 균형된 所得을 실현하는 經濟主體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農村³⁾은 固有한 傳統과 文化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產業·生活空間으로 발전시켜 이를 未來世代에 承繼되도록 함을 이 法의 基本理念으로 한다.

제2조(基本理念)은 한국농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법 작업반 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았다.

제2조(기본이념) 농업은 농업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여 경쟁력 있고 환경과 조화된 생명산업으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한 풍요로운 산업·생활공간으로의 발전을 유도하여 이를 미래세대에 승계되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법령정비협의회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하고 정책목표를 각 주체, 즉 농업·농업인·농촌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농업·농업인·농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그 역할을 규정하였다.

1) 農業은 國民의 食糧을 안정적으로 供給하며 國土環境保全에 이바지하고 基幹產業의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은, 경쟁력을 갖춘 종합과학산업, 국토환경보전과 농촌사회유지에 기여하고 국가와 민족의 유지·형성에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적 산업이다. 요컨대, 농업 - 경쟁력 있고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이다.

2) 農業人은 自律과 創意를 기본으로 다른 產業從事者와 균형된 所得을 실현하는 經濟主體이다. 즉 농업인 - 타산업 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이다.

3) 農村은 固有한 傳統과 文化를 보전하는 풍요로운 產業·生活空間으로 발전시켜 未來世代에 承繼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농촌은, 다양한 경제·사회·문화활동의 기본으로서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한 풍요로운 산업·생활공간이다. 즉, 농촌-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산업·생활공간이다.

第3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農業”¹⁾이라 함은 農作物生產業, 畜產業, 林業 및 이들과 관련된 產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農業人”²⁾이라 함은 農業에 종사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3. “農業經營體”라 함은 農業人,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會社法人을 말한다.
4. “生產者團體”³⁾라 함은 農業生產力의 增進과 農業人の 權益保護를 위한 農業人の 自主的인 組織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를 말한다.
5. “農村”⁴⁾이라 함은 郡의 地域과 市의 地域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6. “農產物”⁵⁾이라 함은 農業活動에 의하여 생산되는 農作物·畜產物·林產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產物을 말한다.

1) 農業 : 제3조 1호의 「農業」을 시행령 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農작물생산업 :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2. 축산업 :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 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2) 農業人 : 시행령 제3조 2호의 「農業人」은 다음과 호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1. 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향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 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 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호의 1000m²는 303평인데, 農漁村整備法 제83조 1항 2호는 「農林漁業人, 營利目的이 아닌 營農을 하고자 하는 자 및 農漁村居住希望者」는 限界農地, 즉 條件不利地域(中山農村 등)에 거주하는 非農業人을 의미하며 이들이 住宅을 分讓·賃貸받은 경우에 부속된 農地를 제외하고 303평 이상을 경영 또는 경작하여야 「農業人」으로 된다는 뜻이다.

3) 生產者團體

(1) 제3호 「生Production者團體」에 관하여 기본법 작업반이 작성한 법안(이하 제1초안, 1998. 6. 29.)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으나 基本法에서는 가목 이하 모두 삭제되었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나.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다.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라.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2) 시행령 제4조는 「生Production者團體」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1호)

②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이하 “임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3호)

③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그 중앙회(4호)

④ 기타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6호)

4) 農村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 중 농림부장관이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제 5조).

5) 農產物 : 시행령 제6조가 정하는 것은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알 기타의 부산물」을 말한다.

第4條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農業人の 責務)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農村地域開發 등을 위한 綜合的인 施

策을 수립하고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

- ② 農業人은 農業·農村의 發展主體로서 品質 좋고 安全한 農產物을 안정적으로 生產·供給하고 生產性向上과 經營革新 등을 통하여 國家發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條文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農業人の 農業·農村발전지원을 위한 責務를 규정한 것이다. 解釋論으로 추가할 것은 國家는 綜合的인 施策을 강구하고 地方自治團體는 그 地域條件에 맞는 施策을 강구하는 것으로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¹⁾

農業人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로부터 지원을 받으므로 그에 상응한 責務를 지는 것이다.²⁾

第2章 農業·農村施策의 基本方向

第5條 (施策의 수립·施行의 기본원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施策을 수립·施行함에 있어서 市場經濟原理¹⁾를 바탕으로 한 效率성을 추구하되, 農業의 公益的 기능²⁾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條文은 政府의 農業施策의 基本原則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자금지원을 비롯하여 생산·유통지원 등 農業전반에 걸쳐 市場經濟原理를 바탕으로 하되, 農業의 外部經濟效果를 고려하여 環境保全·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개입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1) 市場經濟

市場經濟란 經濟의 중점을 市場(需要·供給의 原則이 지배하는)에 둔 經濟를 의미하며, 自由經濟를 말한다. 그러므로 農業분야에서 규제개혁을 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려는 것이다.

非農業人の 農業분야 전출규제를 완화하여(자본·농지 등), 農業분야의 M&A를 촉진하여(경영·자산 이전을 촉진), 農산물가격지지를 축소하여 유통을 효율화한다.

2) 公益的 기능

또한 農業의 公益的 기능의 개념을 法의으로 인정함으로써 對外적으로 WTO 차기 農산물협상에 대응하여 우리 農業政策의 方向을 선언하며 農業投資에 대한 획일적 效率성 논의를 극복하여 구체적 필요에 입각한 直拂制화대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第6條 (國民食糧의 안정적 供給)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國民食糧의 안정적 供給이 國家의 건전한 발전과 國民의 生活安定을 위하여 필수적인 要素임을 認識하고 이를 위하여 적정한 食糧自給水準의目標를 設定·유지하며 적정한 食糧在庫量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章 農業·農村施策의 基本方向은 다섯 개의 시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1)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제6조)
- (2) 농업구조 개선의 촉진(제7조)
- (3)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제8조)
- (4)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제9조)
- (5) 통일대비 농업정책(제10조)

제6조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國民食糧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정 식량자급수준의 目標를 설정·유지하고, 적정재고량 확보를 위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것은 公共備蓄 개념을 法上 도입한 것이다.

주곡을 포함한 국민식량의 安定的 공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 등 생산기반을 확보하여야 하고 식량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³⁾

제6조의 구체적 시행법은 糧穀管理法이다. 이 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수립(제3조)

정부는 매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양곡의 비축(제10조)

농림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급격한 경제변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곡을 비축하여야 한다.

糧穀管理法 제19조는 市·道知事が 양곡가공업의 등록(1항) 및 신고(2항)를 규정하고 제21조는 역시 市·道知事의 營業停止·登錄取消(1항)를 규정하고, 제28조는 登錄取消時 聽聞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市·郡·區廳長의 사무로 이양하도록 2001년에 改正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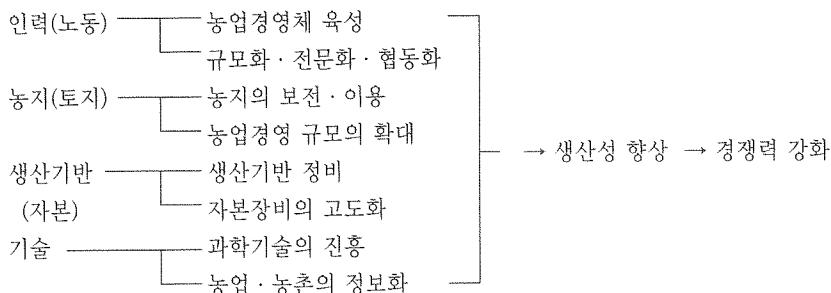
第7條(農業構造改善의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產物의 生產·流通 등 綜合的인 農業構造

의 개선을 통하여 農業의 競爭力を 높이고 農業人의所得이 增大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基本施策의 하나로서 農業構造改善(Structural Reform) 추진에 대한 선언적 조문이다. 構造改善의 목적은 생산성향상에 의한 경쟁력강화이다. 이에 관해서는 이 法 제3장 農業構造改善이라는 제목하에, ① 農業人力의 育成(1절), ② 農地의 이용 및 보전(2절), ③ 農業生產構造의 高度化(3절)에 구체적으로 細分化하여 규정하고 있다.⁴⁾

농업구조의 개선방안을 圖表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⁵⁾

〈농업구조의 개선방안〉



농업구조에 관련된 법률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농업단체에⁶⁾에 관하여

- ① 농업협동조합법
- ②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 관한 법률

(2) 農地에 관하여

- ① 농지법(이에 관련되는 것으로 초지법)
- ②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③ 농어촌정비법

(3)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 ① 농업기계화촉진법
- ② 농어촌 도로 정비법

(4) 농업기술

- ① 농약관리법
- ② 비료관리법
- ③ 종자산업법
- ④ 농촌진흥법
- ⑤ 방조제관리법

(5) 농업구조개선에 관한 자금관리에 관하여

- 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② 농어촌특별세법
- ③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법

第8條(農村地域開發 및 福祉增進)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을 都市와 連繫된 生活空間으

로 발전시켜 農村의 快適性이 增大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地域의 固有한傳統과 文化를 보전·계승하고¹⁾ 農村住民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條文은 현재 WTO/OECD 등에서 중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地域開發(Rural Development)에 대한 선언적인 조항이다.

이는 종래의 가격지지 등 전통적인 농업보호정책은 계속 축소됨에 따라 지역의 창의력 고취, 교통·통신 등 SOC차원의 투자, 농의소득원 확대와 같은 포괄적·지역적인 개발에 대한 투자수요는 오히려 증대되고 이를 통한 직·간접적인 농업·농촌에 대한 파급효과를 제고하려는 측면에서 지역개발은 중시되고 있다.

농업정책으로는 장기간 지속 가능하고 광범위한 농촌의 생존능력개발이 어려워지고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일정인구의 농촌거주가 바람직(농업의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기능, 고용흡수 기능 등)하다.

* 귀농가구 추세 : ('90)371→('95)922→('97)1,823→
('98. 1~5)3,513가구
('90~'98. 5 : 10,681가구)

특히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을 통한 농촌지역의 페적성(amenities) 증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외국의 정책도 개발부문으로 집중되고 있다.

- 일본 : 中山間地域 지원대책
- EU : 농업·농촌의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기금 확충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농업·농촌기본법에서도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농촌지역 산업진흥, 복지향상·소득지원 등을 「농촌지역개발」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원래 「農村地域의 固有한傳統과 文化를 보전·계승하고」라는 문구는 제1초안에는 없었는데 법령정비협의회(1997. 12. 26.)에서 당시 초안내용이 시설 등의 Hardware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나 Software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제2초안에서부터 이 문구가 제2항에 추가되었다.

〈농촌개발·복지에 관한 법규정〉

이에 관해서는 農業·農村基本法 제6장(37~41조)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로는

- ① 농어촌정비법 제5장(29~42조), 제7장(66~75조)
산업진흥·휴양자원
- ②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 ③ 농어촌전화촉진법
- ④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⑤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 ⑥ 농어업재해대책법
- ⑦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직접
지불)

第9條 (環境親和的 農業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環境保全機能을 增大시키고 安全한 農產物의 生產 및 消費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環境親和的 農業을 육성하여야 한다.

이 條文은 농업의 세계적인 추세가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기본시책을 선언적·방침적 조항으로 규정하였으며⁷⁾, 농업의 환경보전효과, 고품질농산물 공급 등을 위한 환경친화적 농업육성을 기본시책으로 규정하였다.

21세기 지속가능한 개발의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의 환경보전효과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한 환경친화적 농업육성을 농정의 기본시책으로 선언한 것이다.

또한 원래 草案에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및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법령정비협의회의 심의에서 삭제되었다.

이 條文은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며 ①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지원하며, ② 유기농 등 친환경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며, ③ 환경과 조화

되는 농촌지역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21세기 지속가능한 개발의 시대를 맞이하여 농업의 환경보전효과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한 환경친화적 농업육성을 농정의 기본시책으로 선언하였다.

제9조를 시행하는 법률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이며, 이 條文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法律은 「수질환경보전법」과 「먹는물관리법」이 있다.

第10條 (統一對備 農業政策)

- ① 政府는 統一에 대비하여 北韓의 農業生產體制, 農地 및 農產物流通制度 등에 대한 調査 · 研究를 하여야 한다.
- ② 政府는 南北韓間의 農產物去來는 民族內部去來 임을 인식하고 南北韓間 農業部門의 相互交流 및 協力を 增進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통일대비 농정시책에 대한 기본방침을 선언한 조항이다.

최근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남북교류 중 농산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식량난을 감안할 때 통일과정에 있어서 농업분야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기본방향을 규정하였다.

남북간 내부거래원칙은 WTO이행특별법,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취지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하였다.

1. 대북 농업지원 및 교류협력 기본방향

① 대북지원은 인도주의 차원의 단기적인 식량지원을 고려해되, 근본적인 농업생산능력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종자, 비료 · 농약 지원 등 북한농업생산성 향상 지원하고, 식량지원은 최소비용으로 영양공급효과를 극대화하되, 투명성을 확보한다.

② 남북관계개선에 따라 농업기술협력, 농업분야 공동개발 · 합작투자 등의 교류 · 협력을 추진한다. 남북한의 작부체계(남한-논, 북한-밭)를 보

완하는 농산물 계약재배 등을 추진하며, 유전자 원의 공동연구, 종자 · 종묘의 교환 등 기술교류, 합영농장 운영, DMZ 등 제3지역의 생태농업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북한 농림축산업 부흥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농업협력과 국제 콘소시엄 참여방안(KADO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연해주 및 만주지역 남북한 공동개발을 지원한다.

③ 통일 이후 식량의 안정적 확보 및 남북한 농업 생산체계, 시장 · 유통, 농지제도 등의 조화로운 통합방안을 수립한다.

2. WTO 이행특별법

제5조(민족내부거래)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의한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이 조문의 취지는 남북한간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함으로써, 第3國의 WTO 협정상의 최혜국대우(MFN - most favoured nation clause) 요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② 물품의 반출 · 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 · 징수 · 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4. 북한농업현황⁸⁾

· 농가인구('94) : 842만명(전체인구의 36.7%)

- 곡물수급('97) : 생산 3,700천톤, 수요 6,700천톤, 해외도입 940천톤, 부족 약 2,000천톤
- 비료생산('94) : 292천톤(남한 1,694천톤)
- 농약생산('94) : 11천톤(남한 30천톤)
- 남북한 농림산물교역('97) : 반출 7,744, 반입 10,402천불

第3章 農業構造改善

第1節 農業人力의 育成

第11條(家族農의 경영안정) 政府는 家族勞動力を
을 主軸으로 한 家族農의 生產性向上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農家의 特성에 맞는 規模化·專門
化·協同化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
하여야 한다.

이 條文은 우리 농업구조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가족농을 특성에 맞도록 육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한다는 것이다.

농업을 경영하는 최소단위는 農家인데, 이 조문은 농가(Agro-Family) 그 자체를 실정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길을 열어 놓은 데 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업을 행하는 主體의 압도적 대부분이 농가인 것이다.

家族農의 形태로 경영하는 主體간의 法律관계는 民法상의 組合(민법 703-724조 ; partnership)이다.⁹⁾ 대개는 夫婦(와 親子)의 2인 내지 4인의 개인으로 구성되며, 이들간에 家族經營協定이 체결되는 것이다.¹⁰⁾

家族農의 法律관계는

① 소득세법 - 家族農의 경영주체(남편 내지 家長)로부터 배우자 또는 子는 紙여를 받는 관계로 되기 때문에 家長의 소득은 紙與를 준 것만큼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② 相續稅法 - 家長으로부터 配偶者 또는 直系卑屬이 農地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특례가 인정된다.¹¹⁾

第12條(後繼農業人의 육성) 農林部長官은 미래의 農業人力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農業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者를 農林部
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後繼農業人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 조문은 담당할 주체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후계자를 선정 지원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농발법상 「농업인 후계자 등의 육성」 조항의 승계규정이다.

현재 농업인후계자 대상 연령이 40세 미만이고, 실질적으로 50세 이상인 후계자도 있으므로 농발법 제4조 1항의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부적절하며, “농업 경영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농업경영인”은 일반명사로서 사실상 모든 농업인을 포함하므로 부적절하다.

농업인후계자 선정 기준 등 시행규칙 제정이 필요하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농업인후계자 등의 육성)

①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림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을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후계자, 어업인후계자, 임업인후
계자(이하 “농업인후계자 등”이라 한다)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수산물의 생산
자단체는 농업인후계자 등의 육성·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농업·농촌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후계농업인의 육성)

①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촌에 정착할 뜻을 두고 농
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
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
업인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농업의 기술 및 경영에 관한 교육 기타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 ③ 후계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교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에서 규정하는 後繼農業人의 육성은 넓은 의미, 즉 젊은 농업인을 육성·지원한다는 뜻이지만, 좁은 의미의 後繼農業人, 즉 어떤 農業人이 자기의 直系卑屬에 농업을 물려주는 경우에는 農地의 一子相續制의 문제가 생긴다. 이것은 農地法에 관련된 문제이다.

또한 후계농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施行規則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후계농업인의 육성(시행규칙 제2조)¹²⁾

- ①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촌에 정착할 뜻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농업의 기술 및 경영에 관한 교육 기타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 ③ 후계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교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第13條 (專業農業人の 육성) 農林部長官은 專門 農業技術 및 經營能力を 갖추고 農業發展에 中樞的이고 先導的인 역할을 할 수 있는 農業人을 農林部 nder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專業農業人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 조문은 農發法상 「전업농업인 등의 육성」 조항을 승계한 규정이다.¹³⁾

農發法 ②항의 내용은 법(상속법 등)보다 정책으로 유도하거나 농업기본법 19조(농업경영의 세분화

방지)와 같이 모든 농업인력정책에 적용되도록 별도 규정함이 적절하다고 하여 현행 基本法 제13조와 같이 규정되었으나, 「一子相續制」의 개념은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13조의 제정과정에 있어서, 첫째, 농정발전기획단은 「경영혁신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법제화 방안」을 제출하고 專業農業人 대신에 “전문농업경영체”라는 명칭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모든 법인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13조와 같이 규정되었다.

둘째, 제13조의 표제를 「농업경영인 등의 육성」으로 하여 「농업인후계자」라는 명칭을 변경하려고 했으나 「농업경영인」이라는 말의 보편성·일반성이 문제가 있어 표제를 農發法 제3조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음 施行規則 제3조는 전업농의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업농업인의 육성(제3조)

-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으로 한다.
-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업인에 대하여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③ 전업농업인의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전업농업인에 대한 지원·교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전업농 육성현황〉

1) 2004년까지 전문화·규모화된 가족단위 전업농 12만호를 육성한다.

- 쌀 6만, 축산 3만, 과수·화훼 등 3만

- '97까지 71,229명 선정, 1조 9,380억원 지원

2) 농진청, 특성화대학(전국 16개소) 등에서 전문 교육을 실시한다.

- 농업 컨설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3) 전업농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전업농 육성대상자에 대한 D/B 구축

4) 전업농에 대한 지원확대로 규모화를 촉진한다.

- 쌀전업농 영농규모화 자금 : ('97)34→('98)35백

만원/호

- 과수·화훼 등 전업농 : ('97)1,200→('98)1,300호

第14條 (女性農業人の 育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政策의 수립·施行에 있어서 女性農業人の 참여를 확대하는 등 女性農業人の 地位向上과 專門人力化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여성농업인육성 및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선언적으로 표현한 조문이다. 여성 농업인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여성농업인을 전문인력화하기 위한 시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은 매 5년마다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을 수립하고(법 제14조, 영 제7조),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한 시책과 전문인력화를 위한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반영하였다.

여성농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현재 「여성농업인육성법」의 제정을 준비중에 있다. 제14조는 제1, 2초안에 없는 것으로 보아 최후단계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施行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제7조)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여성농

업인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업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농업인력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한 제도의 마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경영활동에서의 남녀차별적 요인의 해소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 기타 여성농업인 육성과 관련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여성농업인 현황〉

(1) 농업노동력과 구조의 여성화·노령화

①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청장년층이 농촌을 떠남에 따라 농촌여성의 영농참여가 증가 '96년 말 현재 전체 농가인구의 51.8%, 농업종사자의 51.1%를 여성이 차지

② 또한,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전체 농가인구 중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년 17%(여성 19%)에서 '96년 28%(여성 30%)로 증가

(2) 농업생산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

① 과거 여성은 농업생산에서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였으나, 이제는 주도적 역할 수행 농림업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이 '80년 43.8%에서 '93년 48.6%로 증가

② 농업인후계자 중 여성의 선정비율 계속 증가 추세 ('92) 2.4%→('95) 6.1%→('98) 12.9%

第15條 (營農組合法人の 육성)

① 協業的 農業經營을 통하여 生產性을 높이고

- 農產物의出荷¹⁾·加工·輸出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農業人은 5인 이상을 組合員으로 하여 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營農組合法人은 法人으로 하며,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營農組合法人은 農業人과 農產物의 生產者團體 중 定款이 정하는 자를 그 組合員으로 하되, 組合員이 아닌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農組合法人에 出資하고 議決權이 없는 準組合員으로 加入할 수 있다.
- ④ 營農組合法人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產者團體의 組合員 또는 準組合員으로 加入 할 수 있다.
- ⑤ 商法 第176條의 規定은 營農組合法人의 解散命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은 法院에 營農組合法人의 解散을 請求 할 수 있다.
- ⑥ 營農組合法人의 設立·出資·사업·定款記載事項 및 散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 共同出荷를 의미한다.

農發法상 「영농조합법인의 육성」조항을 승계한 규정이다(다만, 기본법의 성격상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근거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출자 등 구체적인 사업은 대통령령에 위임).

1. 營農組合法人의 육성에 관한 農發法 제6조 (현행 農發法에서는 삭제)와 基本法 제15조와의 차이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영농조합법인의 명칭사용의무 : 農發法 제6조 5항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은 그 명칭 중에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였으나, 基本法에서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를 삭제하였다.

2) 農發法 제6조 6항은 설립에 필요한 행위라고 하여 「⑥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농업인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기타 설립

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基本法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3) 農發法 제6조 7항은 창립총회 의결 후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여 「영농조합법인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고 규정하였으나 基本法 제15조 2항은 단순히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였다.

4) 農發法 제6조 9항은 영농조합법인은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였다.

5) 영농조합법인의 농지 소유 : 農發法 제6조 10항은 「영농조합법인은 그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基本法에서는 이를 삭제하는 대신 農地法 제2조 3호 및 제7조 2항에 의하여 營農組合法人은 農地를 소유할 수 있다.

6) 해산사유 : 農發法 施行令 제14조는 일반적 해산사유(합병·파산 등)만 규정하였으나 基本法 제15조 5항에서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會社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한 해산명령제도를 규정한 商法 제176조를 준용하여 농림부장관의 法院에 대한 해산청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법령정비협의회에서 객관적인 제3자적 입장의 사법(司法)기관이 아닌 정부(농림부장관)에 의한 해산명령제도는 기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은 자유이지만 해산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권한이 다소 강화되어 있다.

2. 영농조합 법인의 성격

영농조합법인은 실체는 조합이나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법 15조 2항) 상법상 합명회사와 유사하다.

3. 영농조합법인 육성사업

1)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공동출자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

대 도모한다. - '98 현재 4,241개소 설립 운영 중이다.

2) 주요지원 내용

① 정책지원

- i) 농림수산정책사업대상자로 선정시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 지원

ii)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자금, 농가영농 규모 적정화사업 지원

- ② 금융지원 : 농기업경영자금 지원
- ③ 세제지원 : 범인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등 면제

4. 조합, 합명회사, 영농조합법인 비교(현행)

구 分	조 합	합명회사	영농조합법인
근 거 법	민 법	상 법	농발법
최소구성원	2인 이상	무한책임사원	농업인 5인 이상
내부관계규범		2인 이상	
법인격유무	계약	정 관	정 관
설립시기	법인아님	법 인	법 인
재산소유형태	계약시	설립등기시	설립등기시
부채초과(파산)시	조합원의 합유	법인단독소유	법인단독소유
조합원 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상세한 규정 있음)	민법 중 조합 규정 준용
규정흡결시			
보완방법	-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민법 중 조합규정 준용	민법중 조합규정준용 (시행령 제16조)

1) 결론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은 실체상 상법상 합명회사와 유사하므로 영농조합 법인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기본법(안)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때 영농조합법인 파산시 조합원은 무한책임 분담한다.

2) 만약 유한책임을 희망할 경우 농업회사법인 중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5. 농림부장관의 영농조합법인 해산청구에 대한 검토

1) 상법 제176조는 특정한 사유(설립목적 불법 등)가 있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상법 제176조가 공익보호를 위해 검사를 해산청구권자에 포함시킨 입법취지를 감안하고, 영농조합법

인의 업무성격 등을 생각할 때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청구권자에 농림부장관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6.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이에 관하여 시행령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제8조)

-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신청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8호 및 제13호에 기재한 사항
 - 2.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 3.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를 두는 영농조합법인에 한한다)의 성명과 주소
 - 4. 2인 이상의 조합원이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

을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충출자좌수와 납입할 충출자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사록
2. 정관
3.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4.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이전 및 변경등기(수 제9조)

①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구소재지에 있

어서는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2주 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신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의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는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하는 조합원이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사무소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준조합원의 자격(수 제10조)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생산자단체에의 가입(수 제11조)

법 제15조제4항(법 제1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업 협동조합·산림조합 및 업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5) 생산자단체에 가입한 영농조합법인의 지도(規則 제4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 그 생산자단체 및 생산자 단체의 중앙 회의 장은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효율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6) 조합원의 출자(수 제12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현금 기타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7)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수 제13조)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8) 정관기재사항(수 제14조)

①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탈퇴 및 제명시의 지분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출자액의 납입방법, 출자액의 산정방법 및 조합원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

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9. 이익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의 비율과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2. 총회 기타의 의결기관과 임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3.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 ② 농림부장관은 영농조합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의 정관례를 정하여 이를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9)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수 제15조)

영농조합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영농조합법인이 합병한 경우
3. 영농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원의 해산 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해산등기 등(수 제16조)

- ① 영농조합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청산이 종결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제193조 및 제197조 내지 제2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관할등기소(수 제17조)

- ① 영농조합법인의 등기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 ② 관할등기소에는 영농조합법인등기부를 비치한다.

(12) 다른 법률의 준용(수 제18조)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16條 (農業會社法人的 육성) ① 企業的으로 農業을 경영하거나 農產物의 流通·加工·販賣를 하고자 하는 者 또는 農業人の 農作業을 대행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業會社法人을 設立할 수 있다.

② 農業會社法人을 設立할 수 있는 者는 農業人과 農產物의 生產者團體로 하되, 農業人이 아닌 者도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의 범위안에서 農業會社法人에 出資할 수 있다.

③ 第15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農業會社法人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 農業會社法人的 設立·出資 및 附帶事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農業會社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商法 중 會社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農發法상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조항을 승계한 규정이다. 다만, 기본법의 성격상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근거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설립절차·부대사업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1. 農發法에는 있으나 基本法에서 제외된 내용

1) 農發法 제7조 4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규정되어 있었으나¹⁴⁾ 기본법 제16조에서는 이것이 삭제되었다.

2) 農發法 제7조에는 농업회사법인의 해산명령제도가 규정되지 않았는데, 기본법 제16조 3항은 상법 제176조를 준용하여 농림부장관의 농업회사법인의 해산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 농업회사법인 육성사업¹⁵⁾

1) 목적 :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향상과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및 농작업의 대행

으로 노동력 부족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한다.

- '98 현재 1,595개소 설립 운영

2) 지원내용

① 정책사업 지원

- i)농기계 구입자금, 시설설치자금(농기계보관
창고 등) 등
- ii)농가영농규모 적정화사업 지원
- iii)농림수산정책사업대상자로 선정시 소요자금
을 지원
- ② 금융지원 : 농기업경영자금 지원
- ③ 세제지원 : 법인세 감면,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면제

3.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1)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수 제19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2) 비농업인의 출자한도(수 제20조)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이 아닌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대사업(수 제21조)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4.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4) 정관례의 작성(수 제22조)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의 정관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농업회사법인」이 株式會社 형태도 가능한가?

기본법 제16조 5항에서는 「商法 중 會社에 관한 규정을準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施行令 제19조 3호에서는 株式會社를 들고 있으므로, 施行令 제20조는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총 출자액의 2분의 1로 제한하고 있고 株式會社 규정의 준용은肯定的으로 새긴다. 獨逸法상으로는 株式會社 형태의 농업회사법인도 가능하나, 日本에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5. 일본의 농업생산법인제도

구 분	내 용
창 설	1962년 농지법 개정으로 창설 (농지법 제2조제7항)
성격	농업인과 동등하게 농지취득이 가능하고, 농업경영을 행할 수 있음
종 류	농사조합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구성원	농업인 및 법인에게 농지를 제공한 자 또는 법인의 상시 종사자 *최근 '93년 농지법 개정에서 법인에 현물출자를 행한 농지보유 합리화법인, 농협, 농협연합회, 일정범위내에서 법인의 사업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신기술을 제공하는 자는 구성원으로 인정
사업범위	농업 및 이에 부대한 사업 *최근에 농축산물의 가공, 저장, 운반, 판매 농작업의 수탁 등도 행할 수 있도록 함.
현 황 ('95년현재)	농사조합법인(1,335), 유한회사(2,797), 합자회사(14), 합명회사(4) *유한회사수만 증가추세이고 나머지는 정체상태

第17條 (農業人の 經營革新 및 資金支援)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인이 지속적인 經營革新을 통하여 所得을 높일 수 있도록 農業經營의 相談·諮詢, 教育訓練 및 情報提供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農業經營體에게 그 事業計劃, 技術水準 및 經營能力 등을 고려하여 農業分野의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① 제4조의 3(농림어업전문경영자교육과정의 설치·운영 등) ② 제25조(농림어업의 취업의 훈련지원 등) 또한 「고용정책기본법」③ 제20조(고용촉진훈련의 실시)등의 條文의 취지와 ④ 농정발전기획단이 제출한 「경영혁신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법제화방안」을 검토·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條文은 두 가지를 骨子로 하고 있다.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쟁력 강화의 主體로서 農業經營體(농업인 및 법인경영체·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가 자율적인 경영혁신을 할 수 있도록 경영상담(Consulting)과 농업인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지원방침을 천명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1항)¹⁶⁾ 둘째, 農業經營體에 대한 종합자금제를 도입하였다.

〈 종합자금제 도입방안 〉

· 개요 :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발전단계에 맞추어 수요자 중심으로 적기에 객량을 종합지원 한다.

- 2002년까지 단계별로 도입 추진

※ 현행정책자금과 종합자금 지원방식 비교

구 분	현행사업별 지원	종합지원제도
지원 방식	개별사업별 분산지원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른 종합지원
대상자 선정	시장·군수 (농발심의회)	대출취급기관 (금융기관)
자금 지원	연1회 일괄선정·지원	수시 선정·지원사업 평가 후 추가지원
사후 관리	채권관리 중심	경영·기술컨설팅 중심

* 일본의 종합금융제도

① 농업경영기반자금(Super-L자금) : 농업경영자시설 자금

② 농업경영개선촉진자금(Super-S자금) : 인정농업자 운전자금

〈 농업인의 교육훈련의 내용 〉

1) 전문경영체에 대한 경영교육실시

농업법인경영체, 전업농육성대상자, 후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현장교육 등 집중경영교육을 실시한다.

2) 일반농업인에 대한 기초 경영교육을 실시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98년부터 15시간이상 농업인 교육과정에 필수과목으로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각 교육기관의 농업경영교육을 전담할 교육요원을 집중 교육하고 있다.

3) 농업인교육체계 개선

① 농업인교육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계획 수립하고 ② 교육프로그램을 D/B화하여 제공하므로써 필요한 교육 선택 가능하게 한다.

제2항의 資金支援에 관하여 제2초안에서는 轉業(이농) 지원(1항)과 귀농지원(2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나 基本法 제17조 2항에서는 이러한 구별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 1·2 초안 제16조 2항에서는 資金支援에 관하여 표제도 「종합자금지원」이라고 하고 條文 내용에도 「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종합자금제도입」을 條文상 나타냈으나 基本法 제17조 2항에서는 「종합적」이라는 말을 삭제하였다.

第18條 (農業關聯團體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の 權益를 보호하고 經濟活動을 촉진하기 위하여 生產者團體 및 農業人團體등 農業關聯團體의 設立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초안 제17조에서는 표제가 「농업회의소」로 되어 있었고, 會議所 설치에 反對意見이 있어서 이 案은 좌절되었다.

우리나라에서 1988. 10. 31 「전국농민단체협의회」가 창립되었으며, 2001. 2. 26에 확대개편대회가 열렸다. 현재 회원단체도 22개이고 회장은 김남용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이다. 전국의 농림부 인·허가 비영리 법인은 총 159개이다.¹⁷⁾

제2초안 제17조(농업회의소)의 취지는 다음과 같았었다.

1) 농업회의소 지원근거 마련 필요

① 농업인 단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②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정부정책의 대응성(responsiveness)·일관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다.

2)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는 없고 농업회의소 정관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 추후 농업회의소 설립동향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 각국의 농업회의소 설립 예 >

구 분	일 분	프 랑 스	독 일
명 칭	전국농업회의소	Les Chamber d' Agriculture	Landwirtschaftskammer
설립법적 근거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1951)	농촌법(1935)	주법(州法)
기 능	농지관리+농정활동	지도+객관적 조언기능	지도기능
성 격	행정기관+이익단체	이익단체	농림부산하기관화
계통조직	시·정·촌→현→전국	고문→도→지역→전국	군→주→전국
재 원	국고보조+회비	토지세부담금+ 국고보조+서비스수수료	주정부보조금+서비스 수수료
회장의 임기	3년	3년	3년

농업회의소의 설치문제도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第2節 農地의 이용 및 보전

第19條 (農地에 관한 基本理念) 農地는 國民食糧의 안정적인 供給 및 環境保全을 위한 基盤이며 農業과 國家經濟의 調和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資源으로서 소중히 이용·보전되어야 한다.

이 조문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선언한 규정이다.¹⁸⁾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면서(헌법 121조), 농지의 소유 및 거래에 관한 사전적 규제는 완화되며, 농지취득 후의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 條文 施行法은 농지법으로서 이것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농지면적현황>

1) '97말 농지면적은 192만ha로 최고 232만ha('68)
대비 40만ha 감소
- 최근 5년간('93~'97) 농면적은 태용도 전환, 유
유지 증가 및 밭전환 등으로 매년 약 34천ha씩 감소
(여의도의 110배)

(단위 : 천ha)

	'85	'90	'95	'96(A)	'97(B)	증감(B-A)
계	2,144	2,109	1,985	1,945	1,923	22(△11%)
논	1,325	1,345	1,206	1,176	1,163	△13
(벼재배면적)(1,230)	(1,244)	(1,056)	(1,050)	(1,052)	(2)	
밭	819	764	779	769	760	△9

2) 현재의 감소추세가 지속될 경우 쌀 자급유지에 필요한 적정면적 110만ha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쌀자급을 위한 2004년 소요 농지목표

· 농지 180ha, 논 110만ha, 벼재배면적 92만ha

* 생산량 3,070만석(단수 480kg)

第20條 (農地의 所有와 이용)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憲法상 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農地의 所有등에 관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가 農業과 國家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農地의 利用增進에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제1항에 관한 자세한 규정은 農地法 제2장 農地의 所有(6~12조)에 규정되어 있다.¹⁹⁾

제2항의 農地의 利用에 관해서는 農地法 제3장 農地의 利用(13~29조)에 상세한 규정이 있다.²⁰⁾

1)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지법상 수립하여야 하는 「농지이용계획」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2)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는 규정이 없다.

〈농지 이용계획〉

1) 개 요

① 경종농업, 시설농업, 과수, 축산, 농업보호, 농업유지, 다목적지구 등 7개 용도지구로 구분한다.

② 수립대상 : 148개 기관(군지역과 농지면적 3천 ha 이상 시·구) '95. 10· 계획수립에 착수하여 '97. 6. 30 수립 완료 · 사용예산 : 시·군 505 백만원, 농진공 30백만원

농지이용계획의 면적은 도면을 구적한 것이므로 일부 비농지가 포함되어 있어 공식통계와 차이가 있다.

2) 수립결과 및 활용계획

〈수립결과〉

농지면적	경종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2,278 (100%)	1,557 (68.4)	53 (2.3)	154 (6.8)
축산지구	농업보호지구	농업유지지구	다목적지구
35 (1.5%)	69 (3.0)	323 (14.2)	87 (3.8)

〈활용계획〉

1) 농어촌발전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계획 수립시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

2) 농업관련 정책자금 등 지원시 심사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예) 경종농업지구에 축산단지 조성등 신청 시 우선순위에서 제외

第21條 (農地의 보전)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地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農地의 보전에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规定에 의한 施策을 수립·施行함에 있어서 農業生產基盤이 整備되어 있거나 集團化되어 있는 優良農地가 우선적으로 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i) 농지의 보전에 관한 기본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였다.

ii) 농지법 제4장 농지의 보전 등(30-45조)에 규정되어 있다.²¹⁾

〈농업진흥지역제도의 도입 · 운영〉²²⁾

1) 절대 · 상대농지제도를 폐지하고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1992), 타용도 전용을 엄격히 제한한다. 농업용시설, 도로, 철도 등 SOC를 제외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2)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제된 면적 이상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 지정한다. '97말 농업진흥지역 면적 : 1,055천 ha(이중 농지 988천ha)

〈연도별 농지전용실적〉

	진흥지역 지정전				진흥지역 지정후			
	'85	'90	'91	'92	'93	'95	'96	'97
진흥지역안 (절대농지)	482	5,727	5,444	4,962	2,063	2,831	2,734	2,802
진흥지역밖 (상대농지)	1,640	4,866	6,417	9,293	11,144	13,448	13,877	12,593
계	2,122	10,593	11,861	12,253	13,207	16,279	16,611	15,395

농지전용 면적은 매년 증가추세이나, 농업진행지역 지정 이후부터는 진흥지역밖 중심으로 전용됨.

이상 基本法 제3장 2절 農地의 이용 및 보전(19-21로, 3조문)에 관해서는 農發法에는 관련조문이 없었다.

農地의 擴大에 관해서는 「農地擴大開發促進法」(1975. 4. 11, 法律 2767호)이 있었으나 이것은 農漁村整備法(1994. 12. 22, 法律 4823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²³⁾ 이러한 法律 이외에 또한 「오리개발촉진법」(1988. 12. 31, 法律 4060)이 있다.

第3節 農業生產構造의 高度化

第22條 (農業生產基盤의 整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產業生產力이 확보될 수 있도록 農業生產基盤의 整備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1) 農業생산 기반정비에 관한 선언적 조항이다.
- 2) 農業생산기반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① 법2조(정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農業기반정비사업, 農業생산기반개량사업, 농지확대개발사업, 영농시설확충사업 등

② 제3장 農業생산기반정비(5조~21조)에서 세부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책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언적 조항만으로 족하고 별도시행령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농발법 46조 「농촌용수계획」은 개별조항별로 농어촌정비법에 반영되었다.

農村의 構造改善에 관해서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이 있다.

또한 生产기반정비에 관해서는 「농어촌도로정비법」(1991. 12. 14)이 있다.

〈생산기반사업 추진성과〉(뒷면 표 참조)

1) 그동안 꾸준한 투자의 실시로 기본적 영농기반은 완비단계에 있다.

농촌용수개발²⁴⁾: 907ha(전체논면적대비 수리답율 75%)

경지정리 : 713천ha(경지정리를 61%)

2) '94년 이후 계속된 가뭄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평년작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96, '97년 대풍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3) 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한 「농촌용수 10개년 계획」('95~2004)이 수립 되었다.

① '94년 남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을 계기로 중장기 가뭄대책 마련하였다.

② '95년~'97년 기간중 2조 6천억원을 투자하여 계획대로 추진중이다.

第23條 (農業經營規模의 적정화 및 農業經營資產의 流動화의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生產性을 향상시키고 農業人의 所得이 안정될 수 있도록 農業經營規模의 적정화 및 農業經營資產의 流動화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1) 영농규모확대 및 경영자산 유동화에 대한 선언적 조항이다.

- 동 조항의 시행을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공포)이 시행되고 있어 시행령에는 규정이 없다.

2) 농발법 9조의 「경영자산을 이전한 농업인 등의 지원」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반영되었다. 규모화촉진 직접지불제를 '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농규모화사업은 農業기반공사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다.

〈영농규모화 사업현황〉²⁵⁾

1)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ha)

	계	'90~'97	'98계획	'99~2004
계	154,240 (47,114억원)	55,963 (22,498)	15,208 (3,598)	83,069 (21,017)
농지매매	63,228	39,675	4,480	19,073
임 대 차	87,620	15,321	10,464	61,835
교환·분합	3,392	967	264	2,161

2004년까지 5ha규모의 6만호, 3ha규모의 4만호의 쌀전업농을 육성한다.

<주요 생산기반정비사업 현황>

구 분	목 표	'97까지	'98계획	'990 후
농촌용수 개발사업	96천ha 44,500억 원	13천ha 8,422억 원	6천ha 4,111억 원	77천ha 31,967억 원 *2004년까지
지하수 개발사업	57천ha 3,920억 원	37천ha 2,082억 원	1천ha 80억 원	19천ha 1,758억 원 *2004년까지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70천ha 14,526억 원	9천ha 1,355억 원	1천ha 372억 원	60천ha 12,799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7,208개소 46,771억 원	6,244개소 9,145억 원	562개소 2,967억 원	10,402개소 34,659억 원
간척농지 개발사업	208천ha	74천ha	1.5천ha	132.5천ha
대단위농업 종합개발 사업	21개소 266천ha 50,321억 원	14지구 141천ha 24,680억 원	7지구(계속) 125천ha 3,335억 원	7지구 125천ha 22,306억 원 *2004년까지
배수개선 사업	207천ha 27,700억 원	81천ha 7,807억 원	4천ha 1,645억 원	122천ha 18,248억 원 *2010년까지
밭기반 정비사업	110천ha 25,794억 원	21.6천ha 4,305억 원	8천ha 1,987억 원	80.4천ha 19,502억 원 *2004년까지
경지정리 사업	(일반경지정리) 800천ha (대구획경지) 정리)200천ha	658천ha 41천ha	23천ha 14천ha	119천ha 145천ha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2,000km 28,600억 원	3,508km 3,477억 원	2,100km 2,130억 원	16,392km 23,003억 원 *2004년까지

2) 사업성과

① 쌀전업농 경영규모 확대 ('95~'97 : 20,703명)

- 호당면적 : (지원전) 2.1ha → (지원후) 3.6ha
(1.5ha 증가)

- 3ha이상 농가 : (지원전) 21.1% → (지원후)
52.5%

② 농업인의 청장년회 : 규모확대 농가 중 50세 미만이 80%

治團體는 營農費用을 절감하고 農業의 生產性을 높일 수 있도록 農業機械·農業資材·農業施設의 研究·開發·普及과 그 活用을 위한 教育訓練 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이 條文은 農業기계화 및 시설현대화를 위한 총괄 규정이다.

1) 농업기계화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농업기계 촉진법」이 있으므로 농발법 5조의 2항 및 3항은 농업 기계화 촉진법으로 이관하여 규정되었다.

2) 시설현대화에 대해서는 개별법이 없어 농업·농촌기본법에서 시설현대화와 유리온실관련규정을 함께 규정하려고 하였으나 농업용 고정식 온실과 같은 너무 세부적인 사항을 기본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상과 같이 제24조를 규정하였다.

제24조도 농발법 제5조 중 기본원칙에 관한 것도 기본법 제24조에 규정하고, 세칙적인 농발법 제5조 2·3항은 농업기계화촉진법으로 이관하였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 시설현대화에 대한 개별법을 제정하거나,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농업구조현대화촉진법」(안)으로 확대 개편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발법 제5조의2 삭제 사유〉

농업용 고정식 온실은 건축법 제5조의 의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농발법 규정이 없어도 농업용 고정식 온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고만으로 이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농발법 제5조의2는 기본법(안)에서 삭제하였다.

〈농업기계화 기본방향〉('97~2001)

벼농사중심의 농업기계화를 밭농사·축산분야로 확대

1) 작목별로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일관기계화 추진하고 있다.

① 벼농사는 2004년까지 건조작업을 포함한 저비용 대형기계화 일관체계를 확립한다. 관리작업의 생력화와 산물 수확·건조의 일관기계화를 실시한다.

② 밭작물의 작목별 기계화영농 종합 공정시스템 추진한다. 밭작물의 기계화재배양식 표준화 및 관리기술을 개발 보급한다.

③ 축산은 축사의 현대화와 사양관리작업의 일관 기계화를 추진한다. 축사의 환경제어 및 분뇨처리시설의 기계화를 추진한다.

2) 작목별, 경영체별 저비용의 기계화 표준모델 개

발 보급으로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한다.

① 지역별 주요농기계의 적정공급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한다.

② 작목별로 경영체중심의 기계화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3) 농기계 지원체계를 이용을 증대 및 사후관리위주로 전환한다.

① 농기계부품의 규격표준화와 공용화를 추진한다.

② 농기계, 조작, 수리, 및 이용 능력을 제고한다.

4) 수립결과 및 활용계획기계 우선 개발 실용화한다. 노령차·부녀자에 맞는 경량화, 자동화된 농기계를 개발한다.

第25條 (農業科學技術의 振興)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의 先進化·尖端化를 촉진할 수 있도록 尖端農業科學技術 및 實用農業技術의 研究·開發·普及 등 農業科學技術振興을 위한 綜合的인 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條文은 농발법 제10조(농림수산과학기술진흥) 을 옮겨서 규정한 것이다.

1) 농업과학기술진흥에 대한 선언적 규정이다.

개별법이 없으므로 원칙을 기본법에 규정하고 농업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및 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한다.

2) 기본계획 포함사항(시행령에 규정)

①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 중장기목표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② 중점개발대상기술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③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업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영23조)

영 제23조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분야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목표를

설정하고, 민간 및 공공연구 개발의 활성화와 농업과학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소관농업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와 그 보급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개발한 기술의 활용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농업기술개발사업 주요내용〉

1) 현장애로기술사업

농업인의 피부에 와닿는 영농현장 중심의 기술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농림업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제고한다.

①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i) 기술개발수준이 첨단기술에 비하여 단기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기술

ii) 지역농업인들이 원하고 있으며 비교적 저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한 기술

iii) 기술개발시 농림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기술

② 농업인개발과제

i) 농가소득증대와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할 수 있는 실용기술

ii) 농업인(단체)이 직접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는 실용기술

iii)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기술

2) 첨단기술개발사업

생명공학, 신소재, 전자정보 등 주변 첨단기술을 농림업에 응용하여 농림업의 첨단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

① 첨단기술개발과제

i) 기술개발 수준으로 보아 비교적 장기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

ii) 개발보급시 농림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iii) 저비용, 고효율 농업실현 기술

iv) 산업화 및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

② 기획연구과제

정부정책상 긴요한 농림분야 기술개발 과제

· 체계적인 연구기획에 바탕을 둔 과제지정을 공모한다. 방식에 의한 품목별 일관 기술을 개발한다.

3) 벤처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농림기술개발사업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기술로서

i) 신규성 및 사업화 가능성 인정되는 기술

ii) 기술적, 경제적 과급효과가 크고 실용성이 높은 기술

iii) 하이테크기술, 수출산업화가 기대되는 기술, 수입대체 효과가 큰 기술, 에너지절감 기술 등

第26條 (벤처 農業 等의 육성) 國家 및 地方 自治團體는 農業분야의 尖端科學技術 및 營農·經營 技法의 開發를 嘉勵하고 이를 普及하며, 農業과 農業關聯產業의 有機的인 連繫를 통하여 農業의 附加 價值을 높이기 위하여 벤처產業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

농업기본법·농발법에는 관련조문은 없다.

1) 벤처 농업육성에 대한 선언적 규정을 마련하였다.

최근 생산체제 등 경제활동의 중심이 대량생산을 목표로 하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에서 특정분야의 창조적·전문적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로 이전하고 있다. 중소기업분야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벤처기업의 농

업분야의 지원조항을 마련하였다.

2) 농업경영체 등 지원대상

그러나 기본법施行령에 기술지도·자금지원 등 지원방법에 관하여 규정이 없고 농업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 동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0호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의 벤처농업 현황〉

1) '97. 6 현재 농업관련자재산업중 벤처기업화가 가능한 업체수는 38개로 추정 한다.([농경과 원예] 선정)

- 설립년도 : '90년대 이후

- 평균매출액 : 약 26억원(최소 : 2천만원, 최대 : 130억원)

- 년간 R & D 규모 : 매출액의 17.3%

2) 주요 연구·활동 분야

① 기초과학 : 「농업용 토양, 수질분석 및 시비처방 소프트웨어」 등

② 생명공학 : 「미생물 및 무공해 농약」, 「합성유전자」 등

③ 에너지 및 환경관리 : 「농업용 태양열 집중난방시스템」 등

④ 신소재 및 바이오 : 「바이오 원적외선을 이용한 농업용 세라믹」 등

⑤ 복합환경제어 및 프로그램 : 「양액자동공급장치」 등

⑥ 각종 자동화자재 및 로봇 : 「무인방제기」, 「선플 포장 설비」 등

3) 벤처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농림기술개발사업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기술로서

① 신규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

②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성이 높은 기술

③ 하이테크기술, 수술산업화가 기대되는 기술, 수입대체 효과가 큰 기술, 에너지 절감기술 등

〈미국의 벤처농업 지원현황〉

1) 농업배체연구 및 상업화 공사(AARC : Alternative

Agricultural Research and Commercialization Corporation)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① 농림산물, 축산부산물 등을 이용하여 식품·사료이외의 생산물을 제조하여 상업화하려는 농촌지역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농촌 모험자본(Venture Capital Firm)인데 독립기관이었으나 '96 농업법에서 100% 정부소유로 전환하였다.

② 투자는 대응투자형식으로 개인과 공사 투자비율이 최대 1:1 이상이며 투자자금 회수는 6~8년 이내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판매액에서 로열티를 받는다.

2) 신규농가(Beginning Farmers) 지원 정책

① 시설자금 : 최대 지원규모 20만불

② 운전자금 : 최대 지원규모 20만불

③ 농지구입자금 : 최대 지원규모 25만불

第27條 (知的財產權 등의 보호) ① 政府는 農業遺傳資源, 營農技術, 商標 등 有·無形의 農業關聯分野의 知的 權利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地域特化產業의 육성과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地域의 固有한 特성을 가진 農產物 및 그加工品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1) 유전자원, 영농기술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언적 조항 신설하였다.

국제협상동향도 지적인 권리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는 추세이다.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였으므로 시행령 제정 필요하지 않다.

〈地理的 表示(Geographical Indication)제도 도입 필요성〉

1) WTO/TRIPs(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상 정의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다른 특질이 근본적으로 지리적 원인에서 기인하는 경우 그 상품이 회원국의 영토 또는 회원국의 지역이나 지방에서 생산되었음

을 나타내는 표시

* TRIPs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2) 배경

WTO 출범과 함께 지적(산업) 재산권이 하나인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을 강화하고 있다.

① 1996년부터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TRIPs 협정을 부활하고 ② 우리나라를 개도국으로 인정받아 2000년까지 협정이행을 유예 받았으나, EU와의 쌍무협상에 따라 '98년 7월 1일부터 협정을 이행하고 있다.

3) 도입필요성

① TRIPs 규정상 자국의 지리적 표시상표를보호받으려면, 먼저 국내적으로 보호제도를 마련하여 보호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국제기구에 등록시켜야 한다.

②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상표법 및 관련법상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국내외적으로 지리적 명칭을 도용한 상표가 난무하고 있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5호 및 제8조(地理的表示의 登錄) 참조

第28條 (農業 및 農村地域의 情報化) ① 國家 및 地方自體團體는 農業 및 農村地域에 대한 情報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效果的に 추진하기 위하여 農業 및 農村地域 關聯情報 를 제공하는 者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발법 제10조의3(농림수산경영정보의 제공)을 승계 규정하였다.²⁶⁾

1) 정보화를 통한 경영혁신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측면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선언적 규정 신설하였다(1항).

2) 정보화사업 추진기구로서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규정 신설(2항 및 3항)

〈농업정보화의 필요성〉

1) 소규모 영농구조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정보화가 필수적이다.

2)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 혁신이 가능하다.

① 정보화를 통해 생산비 및 유통비용절감으로 경영효율 증대 가능

② 인터넷 홈페이지개설 등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시장을 늘릴 수 있는 등 시장의 외연적 확대가 가능하다.

③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등 유통혁신이 가능하다.

〈농림수산정보센터 현황〉

1) 일반현황

① 설립목적 : 정보의 개발·연구 및 보급을 통하여 농업·농촌정보화 촉진 및 기반조성,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활력제고에 이바지

② 주요연혁

· 1992. 2 :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타 설립(출연금 390백만원)

*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농·수·축협 등 10개 농업관련단체가 출연

· 1994. 10 : 「농림수산정보(AFFIS)」 대농법인 정보 서비스 개시

· 1996. 11 :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http://www.affis.or.kr>)

③ 조직 및 인원 : 1본부 1부, 1원 7과(1개 부설기관), 정원 50명

④ 사업비

(단위 : ha)

구분	'92	'93	'94	'95	'96	'97	'98
사업비	2,399	3,914	4,197	4,518	5,482	4,793	4,028

2) 주요업무

① 농림수산종합정보망 구축 운영 및 농림수산정보 개발·보급

② 농업용 S/W 개발·보급·관리

③ 농업생산·경영·유통지원 컨설팅사업

④ 농업경영인 등에 대한 농정정보화교육 사업

〈추진 실적〉

사업명	실적	내용
1) 종합정보망운영		
- 통신망연결	29회선	농림부, 농유공 등 기관단체간 통신망구축
- IP접속	112기관	농업관련 정보제공기관확보
- 가입회원수	47,703명	AFFIS DB/통신서비스 이용 농업인
2) 국내외 DB개발	118종	정책/유통/기술 등 농업관련 DB개발
3) S/W 개발		
- 개발	16종	낙농·양돈·채소 등 농업경영 S/W 개발
- 보급	6,895건	PC통신 및 CD-ROM 등을 통합 보급
4) 정보통신교육	7,924명	
- 정보화교육	4,959명	농업인과 농고교사, 공무원 등 정보화교육
- 경영교육	2,378명	영농법인 등 농업경영체 전문교육
- 특별교육	587명	농적모니터요원 등 특별과정 교육
5) 순회교육	6,004명	작목반, 지방농업교육기관 등 순회교육

第29條 (農業技術開發事業의 주진) ① 政府는
實用農業技術, 農業關聯 生產技術 등을 신속하게 開
發·普及하기 위하여 農業開發 研究機關 또는 團體
등으로 하여금 農業技術開發研究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開發研究課題를 수행하는 農業關聯 研究機關 또는 團體 등에게 이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발법 10조의 2 「농림수산특정연구사업의 실시」를 승계규정

동 조항은 현장애로기술개발의 시행 및 지원근거에 대한 규정이므로 농업·농촌기본법에도 그대로 규정하였다(개별법 없음).

2)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대상자와의 계약(약정체결)
 - 출연금 지급내용 등

농업기술개발사업

영 제24조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개발사업을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다.

1.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 농업생산·유통 및

가공과정 등에 직접 이용되는 실용 기술연구

2. 첨단기술개발사업 : 환경공학·신소재개발
기술 및 자동화기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농업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
 3. 기타 벤처형 중소기업지원기술개발 등 농업과 농업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② 농림부장관은 관계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개발사업의 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 등 자금을 지원받은 농업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2) 그간의 추진현황

- ① '96~' 97말까지 총 1,060과제 선정 지원
· 첨단기술개발 :
- 414과제 □ 기획연구과제 : 11과제
□ 첨단기술개발과제 : 403과제

〈농업기술개발기술 추진현황〉

1) 연차별 중장기 투자계획 : 4,650억원

	'94	'95	'96	'97	'98	'99 이후	계
계	150	613	550	510	434.5 (385.0)	2,392.5 (2,100.4)	4,650 (4,150)
첨 단	-	313	300	260	255.8 (227.0)	1,871.2 (1,631.4)	3,000 (2,678)
현 장	150	300	250	250	178.7 (158.0)	521.3 (469.0)	1,650 (1,472)

주) '94~'97까지는 수산분야를 포함한 농림수산기술개발 사업비이다.

① '98년부터 수산분야 기술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여 추진

② ()는 농림분야 기술개발 사업비임

· 첨단애로기술개발 :

- 646과제 □ 현장애로기술개발과제 : 516과제
 농업인개발과제 : 130과제

② '95~'97년까지 완료된 294과제에 대해서는 실용화·산업화를 적극 추진

第4章 農產物의 需給安定 및 流通改善

第30條 (農產物의 需給 및 價格의 안정) ① 政府는 農產物의 원활한 需給과 價格의 안정을 위하여 農業觀測, 生產調整, 收買備蓄 및 生產者團體의 自助金造成 등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農業經營體, 生產者團體 또는 農產物流通業을 영위하는 者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條文은 農業法 제12조(농업관측과 생산조정), 제13조(자조금의 적립지원)을 옮겨서 규정한 것이다.

1)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하여 정부의 의무를 부여하는 선언적·방침적 규정이다.

-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농안법”²⁷⁾에서 규정하고 있다. 농안법은 2000. 1. 28. 法律 第 6223호로 전문改正되었다.

2) 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조정에 관한 사항은 농안법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4조(주요 생산지의 지정 등), 5조(농업관측), 6조(계약 생산), 7조(自助金의 積立 지원), 8조(가격에 서), 9조(과잉생산시의 생산자보호), 10조(유통협약

* 특허출원 : 60과제(136건)

3) 기업화 사례

- ① 온라인 컴퓨터 전조제어기 개발(안동대 박세현)
- ② 축산분뇨 및 액비처리를 위한 연속시스템 개발(우진 강석진)
- ③ 고추공동집하 및 자동화 처리시설 개발(상주 산업대 김재열)
- ④ 식이버섯 자실체 및 균사체를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포천 종균배양소 정덕균)

및 流通調節令會), 13조(備蓄事業 등), 15조(農產物의 輸入 推薦 등), 16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를 새로운 농안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 ① 다만, 농업관측시행에 관한 규정과 이에 따른 생산조정규정은 없으므로 농업 · 농촌기본법에 규정하였다.
- ② 농업 · 농촌기본법에는 포괄규정인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만을 규정하고 “농업관측 및 생산조정을 농안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여 2000년 농안법 개정에 농업관측을 제5조에 규정하였다.
- ③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농업관측단체는 농안법 제5조2항 농업관측 위원회(농안법시행규칙 5조) 등).

基本法 제30조에 관련된 법률은 양곡관리법, 농산물유통공사법, 양곡증권관리기금법 등이 있다.

〈유통협약/유통조절명령제(농안법 10조) 도입〉

1) 개념 : 농산물유통을 통제, 조절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켜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 유통협약(Marketing Agreement) : 농민, 유통업자, 정부간의 자발적 협정이다.

- 유통명령(Marketing Order) : 농민, 유통업자가 법적으로 구속되는 정부의 명령

2) 연혁(미국에서의 도입배경)

- ① 1930년대 농산물 산지가격 폭락에 대응하여, 농민들이 협동조합운동 전개

- 유통협약 → 자발적인 유통규제 및 생산규제, 품질기준 설정 → 비참여자로 인한 무임승차자 문제로 실패

- ② 1937년 농업유통협정법(Agricultural Marketing Agreement Act) 제정

- 법적 구속력을 가진 유통명령제 도입
- 유통명령제 적용 주요 품목 : 과일 및 채소류(품질차이 및 계절법 공급량 변동이 큰 품목)

- 1980년도 실시현황 : 산지가격 기준 520억불(총 농업수취액의 8%)

3) 유형

- 물량통제(Quantity Control)
- 품질통제(Quality Control)
- 수요촉진조항(Market Facilitating Provisions)

4) 도입검토

- ① 유통협약 : 법에 별도 규정 없어도 시행 가능
하나, 농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강조하는 의미에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 198년 5월 8일 양파에 대한 「농 · 소 · 상 · 경」 유통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② 유통명령 : 법에 그 시행요건, 절차, 효과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하므로 기본법에는 근거만 두고, 상세한 규정을 농안법에 신설하였다.

5) 자조금 조성 ·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

- 6) 다른 법률에 자조금 제도에 대하여 규정된 규정이 없으며, 각 개별법에 모두 자조금에 대한 규정을 설치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농업 · 농촌기본법에 자조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 7) “농안법”에 반영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하다. 또한 「보조금의 豫算 및 管理에 관한 法律」이 있다.

8) 농안법 시행령 제8조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대상 농림수산물, 보조금의 지급 등

9) 시행규칙 제8조

자조금의 관리 · 운영에 관한 규정

제31條 (農產物의 流通改善)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生產者團體를 중심으로 한 生產地流通의 活性化를 적극 도모하고, 農產物의 生產地와 消費地에 都賣市場, 共販場, 物流센터등 다양한 流通施設의 확충과 그 운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 · 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產物의 포장 · 規格化등 物流의 標準化¹⁾를 촉진하고 다양한 流通情報의 審集 · 提供 및 流通教育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

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이條文은 농발법에도 없었다.

농산물 유통개선에 대한 종합적 방향을 규정하였다²⁸⁾

구체적인 내용은 농안법에서 규정한다.

1) 「農產物의 포장·規格化」 등은 대단히 중요한 부문이다. 일본에는 「農林物資의 規格化 및 品質表示의 適正化에 관한 法律」(農林物資規格法)이 1950. 5. 11.(법률 175호)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농림부의 Guideline으로 규격이 구속력 없는 권장사항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법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농산물 유통개혁방안〉

1) 직거래제도화 등 유통경로를 다양화하였다.

- ①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직거래를 활성화
- ② 물류센타 조기화충으로 새로운 직거래망을 형성
- ③ 소매단계의 유통마진 절감 및 소비자정책을 강화

2) 공영도매시장 개혁

- ① 거래제도 및 관리·운영을 개선
- ② 공정거래질서 정착 및 유사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

③ 도매시장 고비용구조를 개선

3) 산지유통을 혁신하고 고품질·안전농산물을 공급

- ① 생산자조직 중심의 산지 유통을 혁신
- ②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대량의 규격 농산물을 출하

③ 고품질·안전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

4) 농산물 물류 및 정보체계를 개선

- ① 효율적인 농산물 수송체계를 구축
- ② 농산물 유통정보를 개선

5) 농산물 수급안전 지원체계를 확립

- 생산자 조직 중심의 농산물 수급을 안정

제32條 (農產物의 品質管理等) ① 政府는 農產物

의 商品性提高와 消費者確認을 위하여 原產地表示

및 品質管理등을 위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

다.

② 政府는 國民의 건강과 農業環境의 보호를 위하여 輸出入 農產物과 動植物에 대한 檢疫 및 衛生 檢查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에 관해서는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4553)이 있었는데, 「농수산물품질관리법」(1999. 1. 21. 공포, 법률 5667호)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품질관련부문은 이 法에 흡수되고, 농산물 검사법은 폐지되었으며, 종래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1993. 6. 11. 공포, 법률 4553호)과 농산물의 검사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장(19-28조)에 규정되고 있다. 法의 이름이 개칭되게 되었다.

基本法 제32조는 농산물 유통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한 선언적 조항이다.

- 농산물 유통에 대하여는 “농안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 농산물 품질관리에 대하여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품질향상 시책〉

1) 안전성 조사

① '98 : 70개 품목 5천점에 대하여 농약잔류, 중금속 등 조사

② 대상품목 : 곡류(3), 채소류(47), 과실류(11), 기타(9)

* 축산물 : 위해요소 중점관리제(HACCP system)을 도입

2)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① 대상품목(총 428개)

· 수입 175, 국산 148, 가공품 105

② 원산지표시 이행율 : ('94)62→('95)82→('97)91%

第33條 (農產物加工產業의 육성) 國家 및 地方自

治團體는 農業과 食品產業의 調和로운 발전과 農產物의 附加價值를 높이기 위하여 農產物加工食品 및 傳統食品의 研究開發, 加工施設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이 條文은 農발법 제15조(국내산 農림수산물의 가공지원)을 옮겨서 규정한 것이다.

이 조문은 農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선언적·방침적 조항이다.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²⁹⁾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에서는 포괄적인 내용만을 규정한다.

〈농산물가공산업육성지원〉

1) 목적

우리 農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제고에 의한 농가소득증대가 목적이다.

2) 지원실적 및 '98 계획

구 분	'93~'97			비고
	지정	취소	운영	
업체수(개소)	1,349	150	1,199	69 ○지원조건 -보조 30% 용자 50%
지원액	2,979	206	2,773	190

3) 대상사 선정

사업희망자가 사업을 신청하면 유통공사와 農협중 앙회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가공산업육성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農림부장관이 선정한다.

4) 향후 개선대책

- ① 경영능력이 있는 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99년부터 보조지원을 중단하고 용자로 전환하였다.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자동화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및 운영자금을 중점 지원한다.
- ② 가공업체 운영내실화 방안 마련
 - '98. 8. 10까지 가공공장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9월말까지 운영내실화 방안을 마련한다.
 - 農수산물유통공사 및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통한 경영기술지도를 강화한다.

③ 가공식품 판매활성화 적극 추진

- 농·수협 등 직판장, 물류센터, 직거래장터 등에 전담판매장을 설치한다.
- 가공식품 상설전시판매장을 활성화 및 우리 식품대 축제 행사를 실시한다.
- 정부지원업체의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수출을 확대한다.

第5章 農產物의 交易 및 國際協力

第34條 (對外通商 및 國際協力) ① 政府는 우리나라의 權利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綜合的 農業通商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農業分野의 國際協力增進을 위하여 農業政策에 관한 情報 및 農業人力·技術의 交流, 農業關聯 國際機構活動에의 參여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政府는 海外依存度가 높은 農產物의 안정적 供給을 위하여 農業投資環境調查 등 海外農業開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에 관하여 農業기본법·농발법에는 관련조문은 없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된 조문이 있다.

차기 Round 및 農業부문 기술·인력교류, 수출입 동식물검역, 해외농업개발투자에 대한 규정이다.

WTO 이행특별법의 취지를 기본법에서 수용하였고, 특히, 식량안보 차원의 해외농업개발투자에 정부 지원이 가능함을 규정한 것이다.

〈'98 農業통상여건〉

1) WTO, OECD에서는 지속적인 農業지지 축소, 추가 교역자유화를 논의

- ① '98. 3. OECD 農業각료회의의 '98. 5. WTO 각료회의를 통해 農業지지 축소, 추가 교역자유화 원칙을 재확인
- ② OECD 農業각료회의에서는 農業지지와 보호의 실질적이고도 점진적인 감축이라는 WTO 農業개혁 장기원칙을 확인하면서도 農業의 다

기능성과 식량안보, 구조개선, 농촌개발의 중요성도 인정한다.

2) WTO에서는 '분석 및 정보교환작업'을 본격화함으로써 차기 협상과 한발짝 더 가까이 연계한다.

① 새롭고 다양한 관심사항들을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국들의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② 미국은 포괄적인 다자간 협상에는 소극적이나 농산물분야 만큼은 수출국들과 적극 동조하여 시장개방확대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③ 고율관세의 삭감, 수출국영무역과 수입국영무역의 규제, 국내보조의 규제 등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3) APEC에서는 미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의 조기 자유화가 지난해에 이어 계속 거론될 것이나 동북아 4국의 심한 반대가 예상된다.

4) 한·미간 기존통상현안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새로운 통상현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① 기존 통상현안 중에서 MMA 쌀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나 현 제도에서는 확실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가 어렵다.

② '98년에는 쇠고기 소비의 감소로 쿼터량 수입이 어려울 경우 새로운 통상마찰이 예상된다.

〈해외농업개발〉

1) 지원방향

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사료곡물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민간의 해외농업개발 투자를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

② 투자사업은 민간 주도로 추진하고, 정부는 투자환경조사 등 간접지원 위주로 실시한다.

2) '98년도에는 IMF지원체제하에서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 투자의욕 축소에 따라 단기적인 해외 투자환경이 악화된다. 민간기업의 해외 농업투자 소요를 파악하여 최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第35條 (農產物의 輸出振興)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產物의 輸出振興과

우리 食文化의 傳播등을 위하여 海外市場開拓, 貿易

情報의 募集·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效果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農業經營體, 生產者團體 및 農產物을 輸出하는 者 등에게 國際規範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條文은 農業基本法 제15조(수입조절과 수출진흥) 및 農 발법 제16조(농림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옮겨 규정한 것이고, 관련된 법률은 農水산물유통공사법(1986. 12. 31 法律 3887호)과 WTO 이행특별법이다.

1) 國際規範이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말한다.

우리농산물의 해외수요창출을 통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 수출촉진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생산자단지의 조성지원"은 WTO 협정상 수출보조로 논란소지가 있어 규정하지 않았다. 농수산물 수출진흥법은 폐지되었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제정된 법률로써 수출관련 규제조항이 주요내용을 구성한다. 정부주도의 수출정책 추진은 WTO농업협정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된다.

〈농산물수출촉진대책〉

1) 수출동향 : ('90) 14.1→('95) 17.5→('97) 18.5억불

2) 수출촉진 대책방향

① 고품질 수출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 한다.

- 전문생산단지 확대지정으로 우수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

- 20대 수출전략 농산물의 선정 및 전담팀을 구성(돼지고기, 김치, 백합, 밤, 인삼, 사과, 배 등 20개 품목)

-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품질개선과 기술개발, 지원강화

② 해외시장개척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국제박람회 참가(11회), 해외특별판촉행사를 개

최(2회)

- 옥외전광판, 전문지광고 등을 통한 해외홍보를 강화
- 물류비 절감지원과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
- ③ 수출애로요인의 적극적인 해소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농산물무역 확대 대책팀 회의를 개최
-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및 우수업체 인센티브제를 실시
- 주문정보제도, 팩스신문 실시 등 수요자 중심의 무역정보를 제공
- 수출애로상담실 운영 및 수출보험제도를 개선
- 「농수산물 무역진흥센터」 건립을 추진

第36條 (農產物의 輸出管理) 政府는 農產物의 輸出增加로 인하여 國內의 農業發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際規範에 저촉되지 아

<농산물수입관리 대책>

1) 수입개방 현황

구 분	'95	'96	'97	2001	제 한
총 품목수 1,420	166 (당년) (누계)	1,344 (누계)	15 1,359	37 1,396	8 1,404 16
자유화율 (%)	94.6	95.7	98.3	98.9	
주요품목	옥수수, 대두	포도, 사과주스	돼지고기, 오렌지	생우, 쇠고기	쌀

'97. 7. 1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등 37개 품목개방으로 쌀과 쇠고기, 생우를 제외한 전품목을 개방하였다.

2) 시장접근물량 현황 및 수입방식

UR농산물 협상 결과에 따라 64개품목(193개HS)에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고 있다.

- ① 국영무역 : 쌀, 보리,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 19개품목(83개 HS)
- ② 수입권공매 : 분유, 참기름, 대추 등 6개품목 (16개HS)
- ③ 설수요자 배정 : 옥수수, 콩우, 콩돈, 전분류 등 39개품목(94개 HS)

3) 수입관리 대책

- ①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 철저
- 수입시기 조절을 통한 수입영향 최소화(고추,

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條文은 농업기본법 제15조(수입조절과 수출의 진흥), 농발법 제17조(수입자유화예시), 제18조(수입자유화에 따른 보완대책), 제19조(심의회의 설치)를 읊겨서 규정한 것이다.

1) 농산물수입관리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가능하나 선언적·방침적 조항으로 규정하였다.

- 관련법률 : WTO 이행특별법, 대외무역법 등

2) 현행 농발법에 규정된 수입자유화 예시, 수입자유화 보완대책 등은 WTO 협정이행계획 및 보완대책추진으로 큰 의미가 없다.

- 농발법상 규정된 수입자유화 보완대책 심의회는 현재 개최되고 있지 않으며 농림부장관 훈령으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본법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마늘, 양파 등)

· 수입방식을 여건변화에 따라 보완하여 수입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예) 국영무역 → 수입권공매 → 실수요자 배정

· 수입물량의 탄력적 운영 : 농업용원자재와 가공용원료는 수급안정을 위해 증량 운영

* '98증량 : 콩돈, 콩계, 옥수수, 대두, 맥주맥, 맥아, 참깨 등 20개품목

② 수입개방 영향 최소화

·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동향 수시점검 및 필요시 대응책 강구 → 산업피해구제제도와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등 탄력관세제도를 활용

- 동 · 식물검역을 강화하여 유해 병원체 및 식물 병해충 유입을 차단

第6章 農村地域開發 및 所得支援

第37條 (農村地域開發施策의 수립)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住民의 삶의 질향상과 國土의 균형있는 開發를 위하여 각 지역의 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農村地域開發施策을 수립 · 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開發施策을 수립하는 때에는 環境保全을 고려하여 開發과 보전이 調和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이 條文은 定住生活圈開發³⁰⁾에 관한 農발법 제32조(농어촌정주생활권의 개발), 제33조(정주생활권 개발대상지역), 제34조(정주생활권개발계획의 수립), 제35조(개발계획의 내용), 제36조(사업의 시행), 제37조(정주생활권개발사업비의 지원 등), 제38조(정주생활권개발위원회), 제39조(기획기술지원단의 운영)을 농어촌정비법 제5장 농어촌 생활환경정비(29~42조)로 옮기고 그 내용을 한 條文으로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1) 현재 WTO/OECD 등 국제적인 농업에 대한 논의 동향의 중심은 지역개발(Rural Development) 이다.

이는 종래의 가격지지 등 전통적인 농업보호정책이 계속 축소됨에 따라 지역의 창의력 고취, 교통 · 통신 등 SOC차원의 투자, 농외소득원 확대와 같은 포괄적 · 지역적인 개발에 대한 투자수요는 오히려 증대되고 이를 통한 직 · 간접적인 농업 · 농촌에 대한 파급효과를 제고하려는 측면에서 강조한 것이다.

2) 특히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개발을 통한 농촌지역의 흐적성(amenities) 증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외국의 정책도 개발부문으로 집중된다.

- 일본 : 중산간지역 지원대책

- EU : 농업 · 농촌의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기금을 확충한다.

3)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농업 · 농촌기본법에서도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농촌지역 산업진흥, 복지향상 · 소득지원 등을 「농촌지역개발」로 총괄적으로 규정한다. 이에 대응하여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령을 대폭 정비한다.

· 農발법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농어촌정비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農발법 34조를 「농촌생활환경개선」보다 넓은 개념인 「농촌지역개발」로 하여 Rural Development에 관한 시책을 총괄적으로 규정하였다. 시책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규정 필요하다. 農발법의 정주권 개발조항(32~39조)는 농어촌정비법(29~42조)으로 이관하였다.(뒷면 표 참조)

第38條 (農村地域產業의 振興 및 開發)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村住民의所得增大와 農村經濟의 生活化를 위하여 產業團地造成¹⁾, 地域特產品生產團地의 육성²⁾, 農產物加工業³⁾을 비롯한 農業關聯產業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 · 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都市民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都 · 農間의 交流擴大 및 農村住民의所得增大를 위하여 地域의特色를 살린 級色觀光 및 休養資源의 開發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 · 施行하여야 한다.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地域文化施設의 設置 · 운영과 地域의 文化行事開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의 성립경위

1) 農발법 第4章 農外所得源의 開發促進(20~31조)에 주로 農工團地³¹⁾(22~2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들 條文은 2000. 1. 28. 農漁村整備法 第7章 農漁村休養資源開發 및 限界農地 등의 整備, 「第3節 農工團地의 開發」이라는 제목으로 農漁村整備法 제85조의 2~5에 옮겨지고, 農業 · 農村基本法 제38조 1항에는 「產業團地의 育成」이라는 用語로 다만 宣言적으로만 규정하게 되었다.

農工團地(產業團地造成) 農發법 22~27조 → 농어

총정비법 85조의 2~5조

2) 基本法 제38조 1항의 「地域特產品 生產團地의 육성」은 원래 농발법 제29조(農漁村特產品生產團地의 지정과 육성)의 조문이 있었는데, 농발법 條文이 農業·農村基本法으로 옮아 오고, 農漁村整備法이 2000. 1. 28. 개정되는 과정에서 「特產團地의 지정과 육성」은 없어지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特產品의 品質認證制度)에 규정되어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농발법 29조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13조

3) 基本法 제38조의 農產物加工業은 원래 농발법 제15조(國內產 農水產物의 加工支援)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건은 農水產物加工產業育成法 제3~5조에 옮아가고, 基本法 제38조 1항에 다만 宣言的인 규정만 두게 되었다.

농산물가공업 농발법 15조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3~5조

4) 農漁村休養資源(Green Tourism)은 농발법에는 없었는데, 農漁村整備法 제7장 1절 農漁村休養資源開發(66~75조)에 규정되었다.

농어촌휴양단지 농어촌정비법 66~75조

5) 제38조는 지역개발의 관점에서 본다면 굳이 농외소득³²⁾, 농업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농촌의 지역개발 및 농업인의 영농다각화, 농업의 복합산업화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필요하다.

6) 이러한 의미에서 농공단지, 특산단지, 휴양단지, 산지가공공장 등을 농업인 소득증대에 관한 시책으로 보아 농어촌정비법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농발법 제20~31조) 농업·농촌기본법에는 「선언적 조항】만을 규정하였다.

〈Green Tourism〉

1) 개요

- 국민소득증대, 관광 Pattern 변화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광형태에 대한 수요증대가 예상된다. 농촌주민의 주도로 농촌의 쾌적성을 상품화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없이 농촌지역에서의 체제·체험을 통하여 도시민들과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지역진흥전략이 필요하다.

2) 日本의 경우 '95년 「농산어촌체계형 여가활동촉진을 위한 기반정비 촉진법」(Green Tourism법)을 제

〈농촌지역개발사업현황〉

구 분	목 표	'97까지	'98계획	'99~2004
정 주 생 활 권 개 발 사 업	일 반 정 주 권 개 발	771면 30,338억 원	219 13,134	60 2,082
	문 화 마 을 조 성	771개소 38,655억 원	51 3,329	21 787
	마 을 하 수 도 설 치	771개소 3,108억 원	51 200	17 68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5,000개소 8,500억 원	1,464 2,530	400 680	3,136 5,290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 (관광농원, 휴양단지민박마을)	1,176 3,055	601 1,355	59 169	516 1,531
농공단지조성사업 (부지조성비지원)	400개소 19,013억 원	292 10,344	4 237	104 9,432
한계농지정비사업	'96년부터 추진 (농어촌정비법제정)		현재 5지구 시범사업 추진중 * 지구당 46억 원 수준 지원	

정, 지원을 실시한다.

- ① 우리나라 「관광농원개발사업」을 실시(97 현재 467개소 지정, 382개소 운영)하고 있으나 숙박·식당시설 위주로 운영되어 지역특색을 살리는데 미흡하다.
- ② 앞으로 지역특색을 살린 새로운 농촌관광형태(문화체험, 농촌체험 등) 개발에 대응하여 개념규정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외국의 사례

- ① 유럽 : 2~300년전부터 市民農園이 발생하여 도시민의 자연회귀 욕구, 농민의 소득증대를 연결시키는 사업으로 시작
 - 영국 : 캠페인, 공동판매장 등 지역불거리 개발
 - 프랑스 : 레크레이션과 민박 위주의 장기체류형 숙박사업 연계
- ② 미국 : 신대륙 개척당시의 농업방식을 재현한 농촌공원 개발과 농촌관광을 연계(SOC 투자, 보조, 세금우대 등)
- ③ 일본 : 지역간 자매결연, 지역박물관, 역사관, 고향체험농원 등을 설치

第39條 (農業人에 대한 所得支援) 政府는 農業人의所得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各號의 지원을 한다.

1. 零細農 등을 위한 지원
2. 土壤 등 環境의 보전을 위한 지원
3. 農業災害에 대한 지원
4. 農業經營의 規模化 등 構造調整을 위한 지원
5. 條件不利地域에 대한 지원
6. 기타 農業生產과 직접 連繫되지 아니하는 所得補助

이 條文은 주로 WTO 이행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정책의 시행)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및 同施行規程과 관련된다.

1) WTO협정상 허용된 직접지불제도 실시에 대한 농업·농촌 기본법상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다만,

WTO이행특별법보다 직접지불제도를 확대 규정하여 정책도입여지를 확장하였다.

2) WTO이행특별법상 적불제와 농업·농촌기본법과 직접지불제도의 비교 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WTO협정이행특별법 11조 2항 1호)은 삭제하였다. 즉, EU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휴경보상 등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고, WTO협정상에도 Blue Box(감축대상이나 감축의무를 면제)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① 영세농등을 위한 보조(이행특별법 11조2항2호)
 - 영세농, 고령농 등을 위한 지원(기본법 1호)
- ②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에 대한 보조(특별법 3호) → 토양등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기본법 2호)
- ③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특별법 4호)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기본법 3호)
- ④ (신설) 농업경영의 규모화, 영농은퇴에 대한 지원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직접지불(기본법 4호)
- ⑤ (신설)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기본법 5호) 현재 간이경지정리, 한계농지정리 등 시행중
- ⑥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특별법 5호) → 기타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기본법 6호)

이상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적불항목은 WTO이행특별법을 근거로 '97 제정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WTO이행특별법 시행령)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직접지불제도 개요〉

- 1) 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의 개념
 - ① 농업에 대한 보조방식의 한 방법으로 “정부가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가에 직접 소득보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가격지지 생산기반지원 등과 같이 지원의 효과가 간접적·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의 농가개개인을 대상으로 직접 소득보조를 하는 정책이다.

유사용어 :

- i) 직접소득지지(direct income support)
 - ii) 직접소득지불(direct income payment)
 - iii) 디커플링(decoupling)
 - iv)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지지(decoupled income support)
- 2) UR 협정상의 허용된 직접지불제

- ① 생산증립적, 소득보조, 재해보상 지원, 이탈농 지원, 조건불리지역지원, 환경농업지원 등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Green Box조항, 부속서 2의 5~13항)
- ② 예외적으로 생산제한하의 직접지불(Blue Box)과 개도국의 농업투자를 허용하고 있

다.

第40條 (農業災害에 대한 施策) 政府는 自然災害로부터 안정적인 農業經營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農產物生產을 위하여 旱害·水害·風害·冷害 등 農業災害에 대한 豫防·應急對策·復舊와 農業災害保險·共濟制度 등 필요한 施策를 강구하여야 한다.

농업재해대책에 대하여 정부가 시책을 마련토록 의무를 부여하는 선언적·방침적 규정이다. 관련되는 法律은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작물재해보험법³³⁾(2001. 1. 22. 法制[6386호])이다. 이 3法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UR 농업협정문에 따른 국내 보조의 분류〉

보조형태	분류	관련규정	관련정책	비고
광의의 직접지불	허용대상 (협의의 직접지불)	부속서2의 5~13항 (green 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증립적 소득보조 · 재해보상지원 · 이탈농 지원 · 조건불리지역 지원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접지불 (관련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EU의 보상지불제 농업 및 농촌개발 투자
		6조1항 (blue 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농업 지원 등 · 생산제한하 직접지불 · 개도국의 농업투자 	
	감축대상	6조1항 (amber box)		
간접보조	감축대상 허용대상	6조1항부속서 2의 2~3항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비율 내에서의 보조는 허용(협정문 6조4항)

〈UR 협정과 우리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직불제 비교〉

UR 협정내용	우리의 WTO 이행법(11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제한을 전제로한 직접지불 2. 생산증립적 소득보조 3. 소득보호 또는 소득안정계획에 대한 지원 4. 자연재해 구호지원 5. 텔농지원 6. 휴경지원 7. 구조조정 투자지원 8. 환경보전 지원 9. 낙후지역원조 10. 기타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p>생산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1호)</p> <p>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5호) 농림수산업재해에 대한 지원(4호)</p> <p>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에 대한 보조(3호)</p> <p>영세농 등을 위한 보조(2호)</p>

우리나라에는 원래 風水害對策法(1967. 2. 28. 法律 1894호)이 있었고, 農漁業災害對策法(1990. 8. 1. 法制 4250호)(公法)이 있는데, 前者는 自然災害對策法(1995. 12. 6. 法律 制4993호)로 代替되게 되었고(이것이 가장 자세하다 — 72조문, 同施行令이 64조문)(公法), 이것에 추가하여 2001. 1. 22. 「농작물재해보험법」(私法)이 제정되었다.

〈농업재해대책〉

1) 우리나라의 주요 농업재해 발생상황

- ① 풍수해 : 주로 농작물 생육시기인 5~10월 사이에 발생하며 피해면적은 매년 감수추세이나 아직도 연평균 5~6만ha 정도 발생
 - 피해면적 : ('86~'90)176 → ('91~'97)54천 ha/년(△69%)
- ② 한 해 : 5~6월에는 논(모내기철), 7~8월에는 밭(고추, 참깨 생육시기)에서 주로 발생
 - 연평균 피해면적(최근 10년간) : 17천ha
 - 최근 10년간 한해 발생면적 : ('92)18, ('94)140, ('95)9, ('97)3천ha
- ③ 우박 : 주로 초여름(5~6월)과 초가을(9~10월)에 국지적으로 발생
 - 연평균 피해면적(최근 10년간) 10천ha
- ④ 냉해 : 7~8월에 찬 성질을 가진 오후초크해 기단이 세력을 남으로 확장함에 따라 저온형성이 나타나 농작물 피해 발생
 - 최근 10년사이 '88년(12천ha)과 '93년(234천ha) 2차례 피해발생
 - 최근 10년동안 풍수해, 한해, 우박, 냉해 등 농업재해가 연평균 117천ha 발생

2) 농업재해대책 추진체계

자연재해관련법령 및 운용부칙 : 농어업재해대책법(농림부), 자연재해대책법(내무부)

- 복구지원대상 농업재해(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로 인한 농업용시설, 농경지, 농작물 및 가축의 피해

〈복구지원대상 규모〉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특별시의 구 : 20억원이상	• 수해, 한해, 냉해 등 : 시·군당 50ha이상 • 서리, 우박, 설해 등 : 시·군당 30ha이상
광역시의 구 : 11억원이상	• 농업시설·농경지·가축 : 시군당 5억원 이상
기타 시·군 : 7억원이상	* 중앙지원대상 피해 시·군과 연접한 시·군은 규모 미만이라도 동일하게 지원

보조 및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규정」을 준용한다.

- ① 피해농가 : 이재민구호, 생계지원, 중고생수 업료면제, 영농자금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과거의) 농조비 감면 등
- ② 농업시설복구 : 농경지, 비닐하우스, 축사, 잡실, 인삼 재배시설 등
- ③ 공공시설복구 : 양·배수장, 용·배수로, 저수지 등 수리 시설

第41條 (農地轉用負擔金) ① 農林部長官은 農村 등의 構造改善事業에 대한 投資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農地法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造成費를 納入하여야 하는 者에 대하여 轉用負擔金을 賦課·徵收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의 금액은 地價公示 및 土地등의評價에 관한法律에 의한 해당 農地의 個別公示地價(해당 農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賦課基準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農地의 個別公示地價의 수준, 轉用에 따른 이익의 발생 정도 등을 참작하여 差等賦課할 수 있다.

③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을 納入하여야 하는 者가 納入期限내에 이를 納入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農地轉用의 許可·協

議·同意 또는 승인을 取消할 수 있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은 農地轉用의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때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農地法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用途變更承認을 얻어야 하는 者중 轉用負擔金의 賦課가 減免되는 施設의 敷地로 轉用된 土地를 轉用負擔金이 減免되지 아니하거나 減免比率이 보다 낮은 다른 施設의 敷地로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轉用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轉用負擔金중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제외한 금액은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農漁村構造改善特別會計에 納入하여야 한다.

⑥ 農林部長官은 農地法 第53條 또는 農業基盤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의 위임 또는 委託를 받은 者에게 轉用負擔金의 賦課·徵收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지급 할 수 있다.

⑦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의 賦課·徵收 및 過誤納金의 반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⑧ 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위하여 轉用負擔金을 納入하여야 하는 者가 納入期限내에 이를 納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이 條文은 원래 農발법 제6장 農어촌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등(45조의 2 및 46조, 1996년 당시 2조문) 제45조의 2(轉用負擔金)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1997년 11월 農業·農村基本計劃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檢討意見으로서 農地法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農村構造改善事業에 대한 投資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農業·農村基本法에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조문

施行令 제25~32조, 施行規則 제5~9조 참조

〈농지전용부담금 감면범위의 확대〉

농업투자재원확보에 차질없는 범위내에서 공공성이 강하거나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감면범위를 확대하였다.(영제25조)

- 사회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교육시설,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사립과학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주택 등

1. 농지전용부담금

1) 근거법률 : 農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45조의2)에 의거하다가 현재는 기본법 제41조에 의거한다.

2) 도입목적

농지 전용에 따른 이익금을 환수하여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한 農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징수한다.

- 시행일 : '92. 1. 1

3) 제도의 내용

① 부과기준 : 농지나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20%를 전용부담금으로 징수한다.

② 부담금 활용 및 징수현황

- 부담금 수입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회계)에 전입하여 경지정리사업·농기계구입지원사업 등에 사용한다.

- 징수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4	'95	'96	'97
농 지	2,441	2,521	3,150	3,735
산 지	879	772	586	579

2. 「농지전용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1) 존치 필요성

①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전용」에 따른 이익금을 환수하여 특별히 농업투자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액 산정시 「전용부담금」 납부액을 전액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므로 개발부담금과 중복 부과되는 것이 아니며,

* 개발이익 = 개발완료시점의 공시지가 - (개발사업개시시점의 공시지가+정상지가 상승분+개발비용)

② 농특세 폐지(년간 1조 5,000억)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폐지할 경우 매년 3,500억원 수준의 농어촌구조개선 투자재원이 감축되어 농촌지원이 크게 위축되고, 농어촌 구조개선에 대한 정부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져 농촌여론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③ 좁은 국토면적하에서 매년 농업외 용도로 전용되는 농지면적이 15~16천ha에 이르는 등 농경지 면적의 감소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국민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적정농지 확보차

원에서 대체농지 조성비 부과는 불가피하다.

④ 또한, 기본법 부처협의시 재경부, 예산청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존치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농지현황(농지전용 면적 등)

(단위 : 천ha)

구 분	'90	'95	'96	'97
농경지	2,109	1,985	1,946	1,924
- 논	1,345	1,206	1,176	1,163
- 밭	764	779	769	761
농지전용면적	11	16	17	15

1. '90~'97년간 농지면적 평균 증가율 : △1.3%

2. '90~'97년간 농지전용 면적 평균 증가율 : 5.5%

3.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과의 비교

구 分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목 적	·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개간, 간척)하여 식량자급 기반유지에 필요한 재원 마련	·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 · 농지전용에 따른 전용이익 확수
부과연혁	· 농지보전법('75. 12. 31) (폐지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91. 11. 22)
부과근거	· 농지법 제40조 제1항	· 농업농촌기본법 41조
납입대상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등	· 대체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
납입대상	· 부과대상농지의 지목별 농지조성비 고시 단가를 기준 - 고시단가(m2당) 최저 : 3,600원, 최고 : 11,840원 - 부과금액 : 부과면적(m2) × 고시단가) · 농지조성비 고시단가는 농림부장관이 농지별로 결정, 고시(농지법 제40조 제4항)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 공시지가의 100분의 20
관리	· 농지관리기금(농지조성계정)	· 농어촌구조개선포럼회계
최근징수 현황	· '96 : 2,005억원 · '97 : 2,609억원	· '96 : 3,150억원 · '97 : 3,735억원

2) 조치계획

대체농지조성비와의 일원화동 「전용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은 농어촌 구조개선 투자재원 확보, 타부담금의 제도개선 방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되 중요산업시설, IMF체재 극복을 위한 기업의 부담경감, 외국인 투자 촉진분야 등에 대하여는 감면폭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할 필

요가 있다(최근의 농지현황 및 대체농지조성비 참조).

第7章 農業·農村發展計劃의 추진

第42條 (農業·農村發展計劃) ① 農林部長官은 農業의 발전과 農村地域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農業·農村發展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과 그 管轄地域의 特性을 고려하여 廣域市·道 農業·農村發展計劃(이하 "市·道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③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 計劃과 그 管轄地域의 特性을 고려하여 市·郡·區 農業·農村發展計劃(이하 "市·郡·區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發展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8조 1항은 농발법 제48조(농어촌발전 기본방침)를, 2항은 농발법 제49조(도농어촌발전계획)를, 3항은 농발법 제50조(시·군 농어촌발전계획)을 규정하였다.

달라진 것은 농발법 제48조 3항에서는 基本方針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내용을 열거하였으나 새로 제정되는 基本法 제42조 1항에는 細部的인 사항을 열거하지 않고 있다. 基本法 제42조는 基本計劃 → 市·道計劃 → 市·郡·區 計劃으로 區分(아래 표 참조)

○ 농발법과 기본법의 비교

구 分	농 발 법	기 본 법	비 고
발전계획 수립주체	농림수산부 장관	농림부장관	
	도지사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시장·군수·구청장	광역지구나 자치구에 있는 농촌지역도 발전계획 수립 필요
발전계획 수립절차	도계획은 도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하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시·군계획은 시·군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시·도계획, 시·군·구계획 구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지방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제33조)	지방자치제에 맞추어 각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발전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 *예산의 차등지원 등으로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第43條 (農政審議會) ① 農業·農村의 發展에 관한 基本計劃, 市·道計劃 및 市·郡·區計劃 기타 農業·農村의 發展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農林部에 中央農政審議會를, 市·道에 市·道農政審議會를, 市·郡·自治區에 市·郡·區農政審議會를 각각 둔다.

② 각 農政審議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條文은 농발법 제52조(농어촌발전심의회)의 내용에 해당된다.

농발법상 규정되어 있으나 운영이 부진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명칭을 바꾸어서 규정하였다.

근거법	명 칭	비 고
농발법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장 : 농림부장관)	'96서면 심의 후 개최 실적이 없음
기본법	농정심의회	중앙농정심의회 시·도 농정심의회 시·군·구 농정심의회

농정심의회에 관하여 시행령 제34~41조에 자세한 규정이 있다.

第44條 (農業·農村發展計劃의 효율적 추진) ① 農林部長官은 基本計劃의 效率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豫算編成時 基本計劃에 포함된 事業費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農林部長官은 각 地方自治團體의 農業·農村發展計劃에 대하여 基本計劃과의 連繫性, 推進實績 및 成果 등을 評價하여 그 결과에 따라 豫算是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 條文과 관련이 있는 것은 舊 農業基本法 제7조 (재정 및 금융조치)이다.

1) 중장기 농업·농촌발전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규정하여 발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2) 사업추진실적을 발전계획에 환류(feed back)시킴으로써 각종 농업·농촌정책 수립시 반영토록하여 시행착오를 없애며,

3) 각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을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등으로 평가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자체간 경쟁과 발전계획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이다.

〈농업분야 차등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시군간 재정력 격차 최고 15배(용인, 영양)
- 획일적인 국고보조사업 추진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과 지방농정의 자율성 확보가 어려움.

2) 차등지원 계획

- '99년에 시범사업으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차등보조를 적용한다.
- 포괄보조형태의 실적가산금 사업지원 규모를 확대
- 인센티브사업에 대해 지방비 부담을 하향 조정(50% → 30%)

第45條 (農政에 관한 年次報告書) ① 政府는 매년 農業·農村動向과 農政施策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中央農政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市·道知事 및 市長·自治區의 區廳長은 매년

당해 地域의 農業·農村動向과 農政施策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農政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해당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规定에 의한 보고서에는 각 종 農業施策 등에 대한 評價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條文은 農業基本法 제4조(농업시책에 관한 문서의 제출) 및 제5조(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내용을 바꾸어서 규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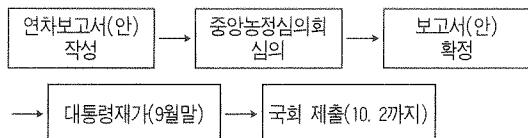
농업기본법상 연차보고서 작성의무를 승계 규정하였다.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당해지역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의무 신설

〈연차보고서 작성〉

○ 주요내용 : 매년 주요 농업동향 및 농정시책 총괄정리

○ 제출절차



第8章 補 則

第46條 (準農村地域에 대한 지원) 第3條 第5號의 规定에 의한 農村외의 地域으로서 農地法에 의한 農業振興地域과 都市計劃法에 의한 開發制限區域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農村으로 보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발법 제66조를 승계 규정한 것이다.

2) 농촌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농촌지역에 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원근거 규정을 존치하였다.

농산물가공·유통사업, 인력육성사업, 농업인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 지원이 필요하다.

3) 施行令 제42조(준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준 농촌지역에 대하여 지원해야 할 사업 및 대상을
등을 규정

第47條 (租稅의 減免)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村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租稅特例制限法과 地方稅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이 條文은 農業基本法 제8조(조세감면조치) 및 農
발법 제72조(조세의 감면)을 승계하여 규정하였다.

농업관련산업의 조세감면을 위한 총괄 규정이다.

<농업인관련 조세감면 현황>

1) 국세부문

① 소득세

- 농업인관련 양도소득비과세(농지의 교환·분합)
- 농업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2,000만 원 이하 상호금융예탁금)
-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 면제 등

② 상속세

- 영농상속인에 대한 추가 기초공제

③ 증여세

- 자영농어업의 증여세 면제

④ 인지세

- 농어업인 등의 작성하는 농업관련 증서 및 서류 등의 인지세 면제

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농업용지자재, 임업용지자재, 축산용지자재

⑥ 부가가치세 면제

- 농업용석유류, 농업인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기자재

- 농업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

⑦ 특별소비세, 교통세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제

2) 지방세 부문

① 어업인 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 자영농어업인, 농가주택개량, 개간농지 등

② 취득세 비과세 :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 등

③ 영농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 농기계류, 축사, 고정식 온실 등

④ 등록세

- 농업법인 설립등기의 등록세 면제
- 협동조합으로부터 담보대책수 저당권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⑤ 자동차세

- 농업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⑥ 사업소제

-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한 사업 소세 면제

⑦ 재산세

- 농가주택에 대한 감면

第48條 (權限의 위임 등) ① 이 法에 의한 農林
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市·道知事, 市長, 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業基盤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管理基金의 運用·관리업무를 委託받은
者로 하여금 第41條第1項 및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轉用負擔金의 徵收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條文은 農발법 제74조(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승계하여 규정한 것이다.

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을 근거규정으로 마련

- 대상사무 :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등

2) 위임·위탁사무에 대한 시행령 제정 필요

施行令 제43조(권한의 위임 등) 참조

III. 農業·農村基本法의 施行上의 問題點

이상 농업·농촌기본법의 법자체의 성립경위와 다른 법률과의 관련을 서술하였다. 그 法律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舊法의 자세한 條文이 축소되었다.

농업·농촌기본법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농어촌발

전특별조치법(농발법이라 약함) 중 중요조문이 농업·농촌기본법과 그 시행령으로 옮겨 오고, 일부는 농어촌정비법으로 옮겼는데, 농발법에서 기본법으로 옮긴 조문은 기본법인 성질상 자세히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 선언적인 조문으로 축소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는 기본법 제30조(農產物의 需給 및 價格의 안정)이다. 이條文은 농발법 제12조(農業觀測과 生產調整)을 승계하여 규정한 것인데, 농발법 제12조는 1항에서 8항까지 農業觀測과 生產調整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였는데, 이條文이 기본법 제30조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지극히 간단한 조문으로 축소되었다.

2. 농업·농촌기본법 條文의 施行法이 없는 것 이 있다.

우리나라 농업·농촌기본법의構成을 보면 농업발전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 열거하여 규정했기 때문에 기본법에는 원칙만 규정하고 이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법률은 전혀 없는 것이다.

예컨대 기본법 제26조(벤처農業등의 육성)에 관련되는 法律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 8. 28. 法律 5381호)가 있고 동施行令 제2조 3항 20호에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을 「벤처기업의 범위」에 넣고 있기 때문에 농업벤처도 일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벤처기업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우선 中小企業이어야 하는데, 中小企業基本法 제3조에 관련되는 中小企業은 별표 4호에는 「종자 및 생산업(표준산업분류부호 01123)」이 경우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되어 있고, 별표 6호에는 「농업 및 임업」(표준산업분류부호 A)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로 되어 있다.

그러나 농업벤처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시근로자수나 매출액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농업·농촌기본법 제26조와 제29조가 규정한 대로 벤처농업

내지는 농업기술개발사업이 육성·촉진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처럼 「농업벤처연구 및 상업화공사(AARC)와 같은 역할을 하는法人 또는 團體 등이 새로 설립이 되어야 하고 「농업벤처육성법」과 같은 새로운立法이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3. 農業會議所의 문제

「농업·농촌기본법」의 草案에는 제1초안(1998. 6. 29.)과 제2초안(1998. 7. 14.)의 두 개가 있는데, 제2초안 제17조에는 농업회의소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 제17조 (농업회의소) ① 정부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 연구, 조사 등의 업무를 농업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삭제되고 현행 제18조의 내용으로 바뀌었다³⁴⁾

- 1) 현재 존재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설립 및 운영지원 등의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행정자치부, 전문가토론회 등).
- 2) 또한 농업회의소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농업회의소법」을 제정·추진 중에 있으므로 기본법에 규정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하다.

따라서 1999. 2. 5.에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을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나아갈 방향설정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농업회의소법」의 제정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農地의 利用增進(농지법 제13~18조)

농지의 利用增進에 관한 農地法의 규정(13~18조)은 일본의 農業經營基盤強化促進法(1993. 6. 8. 전문 37조문)의 취지를 규정한 것인데, 그 일본법에 의하면 特別市·광역시·道(都道府縣) 단계에서 「基本方針」을 정하고(5조 1항), 市邑面(市町村) 단계에서는

「基本構想」을 정한다(6조 3항).

그리하여 이促進法은 주로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農地保有合理化法人(市邑面·農協·民法 상의 公益법인의 3者)은 이농회망농가가 그所有農地를 팔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信託을 받아 그農家에 대하여 農地의 평가액의 7할 이내의 無利子貸付를 한다(農地信託 등 事業 - 4조 2항 2호)(農地의 流動化). 또는 農業會社法人에 대하여 合理化法人이 갖는 農地를 現物出資한다(農業會社法人出資成事業-4조 2항 3호).

둘째 市邑面이 기본구상에 따라 市邑面에서 농업 경영을 하려는 者는 農業經營改善計劃을 市邑面에 제출해서 認定을 받으면(12조)(認定農業人) 農地利用集積을 지원해 준다(13조). 즉 그 農業人の 주변에 있는 農地의 所有者에 대하여 利用權을 설정해 주도록 권장을 한다(13조 3항).

우리나라 農地法에서 규정하는 農地의 利用增進 등(13~18조)에 있어서는 첫째 「基本方針」은 都道府縣이 「基本構想」는 市町村이 세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구별없이 「農地利用計劃」이라고 하여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廳이 세운다(農地法 13조). 둘째, 日本에서는 農地所有合理化法 중에 農協과 民法 상의 公益法人의 3者인데, 市長·郡守·自治區廳長·農協 및 단체만이 農地利用增進事業者가 될 수 있고(農地法 14조, 시행령 18조), 일본에서 인정되는 「認定農業人」은 事業者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個人은 배제한 점에서 農地의 利用增進은 그만큼 非效率的으로 생각된다.

5. 一子相續制

농지의 一子相續制에 관해서는 농업·농촌기본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농지법 제21조 「農地所有의 細分化 방지」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人 또는 農業法人의 農地所有가 細分化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農地가 1農業人 또는 1農業法人에게 일괄하여 相續·贈與 또는 讓渡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현재 한국농업법학회에서는 一子相續制를 연구하고 法案을 작성 중에 있다.

일본에서는 1975년에 租稅特別措置法이 제정되어

농업후계자에게 農地의 生前一括贈與를 한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면 贈與稅의 納付를 유예해 주고 申告 후 20년간 그 農地에서 농사를 한 경우에는 유예세액을 면제하고, 상속의 경우에는 농지의 농업투자가액부분의 상속세만 납부하면 되는 相續稅의 納稅猶豫制度가 시행되고 있다.

6. 限界農地의 整備

이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農漁村整備法 제7장 제2절 76~85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일본의 特定農山村法(전문 23조문)의 취지를 따른 것인데, 우리나라 農業·農村基本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日本의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제35조에는 자세한 규정이 있다.³⁵⁾

일본의 特定농산촌법에 있어서는 市邑面(일본에서는 市町村)이 농림업등활성화 기반정비계획을 작성하면(14조) 이 계획에 부합하는 農業人の 團體가 이 事業을 하겠다고 市邑面에 신청을 하면 市邑面은 그 計劃을 인정하고(5, 7조) 그 團體에게 국가 및 特別市·광역시·道가 融資를 도와주고(6조), 計劃에 필요한 농지의 所有權이전을 해주는 것이다(8~10조). 따라서 市邑面(하부 지자체)가 計劃을 하고 이에 따른 農業人の 團體가 필요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計劃의 이니시아티브가 말단 이해관계자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農漁村整備法의 限界農地의 整備(76~85조)는 그렇지 않다. 그에 의하면 農林部長官이 基本方針을 수립하고(76조), 道知事が 限界農地整備地區를 지정하거나(79조 1항), 또는 道知事에게 限界農地整備地區의 지정을 신청하면(80조 1항) 市長·郡守·農業基盤會社 등이 整備事業을 시행하는 것이다(81조 1항). 그러므로 經營規模의 확대·農地의 集團化·利用權의 集積과는 무관하고 所有權이전과도 관계가 없다.

일본의 「食料·農業·農村基本法」 제21조에는 농업 경영의 규모의 확대, 제23조에는 農地의 利用의 集積, 제24조에는 농지구획의 확대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農業·農村基本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農漁村整備法에 규정되

어 있는 限界農地의 整備(76~85조)에서는 이러한 취지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7. 農產物의 規格化

농업·농촌기본법 제31조 2항은 농산물의 규격화를 촉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規格은 농림부의 Guideline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50. 5. 11. 법률 제 175호로 「농산물자규격법」(農產物資의 規格化 및 品質表示의 適正化에 관한 법률, 정문 26조문 4차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농산물의 規格화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농산물거래에 있어서 가격의 형성은 상품의 규격이 일치하지 않으면 서로 비교가능한 가격이 형성될 수 없고, 需給調整의 指標가 되는 표준적인 상품에 관하여 가격의 공표가 불가능하다. 또한 評價의 기준이 되는 品質 등에 관해서도 객관적인 表示가 없으므로 빈번히 거래당사자 사이에 힘이 센 편이 가격결정의 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소규모의 생산자가 불리하게 되거나 또는 일반소비자가 품질·量目 등이 보장되지 않은 상품의 구입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므로 농산물의 유통이 적정하고 원활하게 거래되고 가격형성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또한 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산물(가공품을 포함하여)의 규격이 통일적인 기준에 기하여 적정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유통이 행하여 지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농산물의 「규격」은 단순히 농산물 그 자체의 品質 뿐만 아니라 포장, 量目 등을 포함한 상품 전체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농산물의 규격 및 이에 바탕을 두는 검사에 관한 제도는 농산물의 유통합리화를 위한 기본적인 대책 중의 하나이다. 규격을 결정하는 主體는 거래당사자의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가급적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主體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國家規格으로 되어야 하고 規格에 관한 제도는 공적인 性格이 강해야 한다.

농산물의 규격은 거래당사자에 대하여 평가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유통과정에 있어서 농업인의 보호

및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관점에서 중요하다.³⁶⁾

8. 土壤汚染防止

土壤汚染防止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法制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農地汚染에 관해서 특별법은 없고 「土壤環境保全法」(1995. 1. 5. 法律 4906호 전문 32조문)과 동施行令(1995. 12. 29. 대통령령 14848호 전문19조문)이 있고, 이에 의하여 土壤環境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에서는 「土壤汚染防止法」(正式명 칭은 「農用地의 土壤의 汚染防止등에 관한 法律」(1970. 12. 25. 法律 139호, 전문 17조문))과 다음과 같은 부속법령이 있다.

- ① 農用地의 土壤의 汚染防止등에 관한 法律의 施行期日을 정하는 政令(1971. 6. 4. 政令 175호). 上記 法律은 1971. 6. 5부터 시행
- ② 農用地의 土壤의 汚染防止등에 관한 法律施行令(1971. 6. 24. 政令 204호)
- ③ 農用地土壤汚染對象地域의 指定등에 관한 節次를 정하는 總理府令(1971. 7. 1. 總理府令 43호)
- ④ 農用地土壤汚染對象計劃의 内容등을 정하는 命令(1971. 7. 1.)
- ⑤ 農用地土壤汚染對象地域의 指定要件에 관한 카도미움의 量의 檢定의 方法을 정하는 省令(1971. 6. 24.)
- ⑥ 農用地土壤汚染對象地域의 指定要件에 관한 銅의 量의 指定의 方法을 정하는 總理府令(1972. 10. 27)
- ⑦ 農用地土壤汚染對策地域의 指定要件에 관한 硒素의 量의 檢定의 方法을 정하는 總理府令(1975. 4. 8)

이상과 같은 차이점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農地의 汚染防止, 특히 카도미움, 銅, 硒素等 특정유해물질의 農地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엄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土壤環境保全法의 운영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주

1) 同旨, 日本 食料·農業·農村基本法(이하 日基

本法이라고 略함) 8조

- 2) 日基本法에서는 「農業團體의 努力」(同9조)과 「食品産業事業者의 努力」(同10조)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11조에서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農業者·農業團體 및 食品産業事業者가 하는 自主的인 努力에 대하여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2條는 「消費者의 役割」로서 食品의 消費生活의 向上에 적극적인 役割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3) 식량수급여건은 다음과 같다.

① 국내여건

- 곡물자급도 : ('90) 43.1 → ('95) 29.1 → ('97) 29.2%
- 쌀 자급도 : ('90) 108.3 → ('95) 95.9 → ('97) 104.8%
- 논 면적 : ('90) 1,345 → ('95) 1,206 → ('97) 1,163ha

- 북한곡물수급추정('97) : 생산 3,700천톤 수요 6,700천톤, 해외도입 940천톤, 부족 약 2,000천톤

② 세계여건

- 인구증가, 곡물생산성 증가세의 둔화, 중국의 식량수입국으로의 전환 등으로 식량 수급 여건 악화(식량 재고비율이 70년대 이후 최저)

7) 농림업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기능 추정(농경연)

		물량(억M/T)	한국(10억원)	일본(10억엔)
강수 저류기능	산림	340~450	3,040~4,590	1,610~3,680
	경지	23~30	940	850
지하수 함양기능	경지	100		
토준 보존기능	산림	1,953㎡	3,781~6,220	2,320~5,570
	경지			100
환경보존기능				
(대기정화)	산림		2,113~15,725	4,873~11,440
	경지			10,850
(수질정화)	산림	230		
(폐기물정화)	경지			140
계	산림		8,934~26,535	8,803~20,690
	경지		940	11,940

8) 文獻

- 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동향, 2권 2호 (2000. 7.), 252 p.
- ②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북농업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C 99-18-1(1999. 12.), 191 p.
- ③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의 농기자재 수급 현황과 남북한협력방안, C 99-30(1999. 12.), 189 p.
- ④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의 농산물 유통과 농민시장운영실태, C 99-29(1999. 12.), 181 p.
- 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 농업 전보체계 구축 방안, C 99-26-1(1999. 12.), 173 p.
- 9) 宮崎俊行, 누구에게 農業을 해받는가, 農業법 연구, 34(1999), 106면
- 10) 宮崎俊行, 激動の25年(1970年~1995年)と日本農業法學, 朝日大學 法制研究所, 1996, 309 頁 이하
- 11) 宮崎, 일본농업법학, 311p. 일본에서는 ①1964년 다음과 같은 「農地生前一括贈與」의 특례가 창설되었다(租稅特別措置法 70조의 4, 70조의 5). 즉 農地所有者가 農地를 後繼者에게 증여한 경우, 後繼者에게 대하여 과하는 贈與稅의 납세를 贈與者의 死亡시까지 유예해준다. ②또한 1996.4.1.에 「農業者 年金法」의 改正에 의하여 專業農家의 農業專業을 하는 家長의 夫人에게 農業者年金加入을 인정하였다.
資料 : 農地 等 - 相續稅 · 贈與稅의 納稅猶豫 制度の手引, 全國農業會議所, 1989. 7., 126 p.
- 12) 후계농업인의 육성에 관한 초창기의 資料로는
 ① 農漁民 後繼者 育成 세미나 報告書, 서울大 農科大學 農業開發研究所 刊, 1981, 169 p.
 ② 農民後繼者 育成事業을 위한 作目別 標準營 農設計, KREI, 研究報告 72, 1983. 12., 157 p.
- 1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전업농업인 등의 육성)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농림어업의 경영규모의 적정화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림어업의 경영능력과 의욕이 있는 농업인 등을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 등으로 육성한다.
②농림수산부장관은 전업농업인 등의 경영자산이 농
- 림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양수인에게 일괄하여 이전되도록 필요한 강구하여야 한다.
- 14) 農發法 7조 4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農業회사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15) ① 農業의 法人經營 分析과 發展戰略에 관한 事例 調査 研究 — 慶南의 事例를 中心으로, M28-5, KREI, 1992, 119 p.
- ② 農業法人에의 挑戰, 實踐을 배우는 法人化 推進의 포인트, 農業法人養成시리즈 No.1, 全國農業會議所, 1993, 246 p.
- ③ 新政策의 展開와 農業法人의 課題, 農業法人養成시리즈 No.2, 全國農業會議所, 1993, 268 p.
- 16) 경영상담과 자문은 한국농업기술센터, 교육훈련은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업전문학교, 연구·정보제공은 KREI 및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담당한다.
- 17) 농림부, 농림부 인·허가 비영리법인 현황, 2000. 10. 466 p.
- 18) ① 農地法制定白書, KREI, 1995. 12. 513 p. ② 獨逸의 農地制度와 農場相續制度, 海外農地資料 92-3, KREI, 1992. 10. 194 p. ③ Grossman & Brusgaard, ed., Agrarian Land Law in the Western world, Essays about agrarian land policy and regulation in twelve countries of the western world, C.A.B International, UK, 1992, 279 p.
- 19) 이에 관한 資料는
 ① 朴珍道, 農지개혁과 農촌사회의 變화, 韓國情神文化研究院, 1991, 102 p.
 ② 農地所有理念과 現況과 改善方案, 政策討論 시리즈 31 KREI, 1986. 8. 151 p.
 ③ 農地所有理念과 現況과 改善方案, 地方公聽會 및 座談會 討議內容, 政策討論 시리즈 32 및 KREI, 1986. 12. 158 p.
- 20) 農地賃貸借法에 관한 資料는
 ① 農地賃貸借法制 定立을 위한 調査研究, 研究

- 報告 135 1986, 12, 208 p.
- ② 安秀洪, 慣行農地貸借法에 關한 研究, 釜山 大 碩士論文, 1979, 2, 58 p.
- ③ 農地貸借法 管理法白書, KREI, 1987, 418p.
- ④ Carter, G. B., Agricultural Tenancy and Arbitration Law in New South Wales, Blackstone Press Pty Ltd., Australia, 1990, 326 p.
- 21) 이에 관련된 資料는
- ① 농지의 保全 및 利用合理化方案研究 農地保全 方式轉換을 위한 接近, 研究報告 166, KREI 1988, 12, 198 p.
- ② 農地保全·利用行政實務教育教材, 農林水產部, 農漁村振興公社, 1990, 8, 111 p.
- 22) 日本의 農業振興地域制度, 農地保全 關係資料 集(제2집) D-50-2, KREI, 1988, 93 p.
- 23) 農地의 擴大에 關한 資料는
- ① 山地開發 및 利用擴大方案, 研究報告 139, 1987, 5, KREI, 378 p.
- ② 山地의 合理的 開發方向, KREI, 1982, 11, 84 p.
- ③ 草地의 造成과 管理改善 政策協議會시리즈 16, KREI 1983, 12, 90 p. 山地(限界農地)에 關해서는 農林家育成과 山林振興에 關한 事例研究-韓國山林農業 實態와 林業·山林問題 研究報告 97, KREI, 1985, 12, 282 p.
- 24) 21世紀 農漁村 地域 用水 需給 및 開發·保全 세미나, 農漁村振興公社, 1991, 246 p.
- 25) ① 農業振興公社 經營 및 制度改善研究 研究報告書, 1983, 10, KREI, 299 p.
- ② 研究適正化事業業務指針, 賣買 510-40호 (1990, 11, 12 制定), 農漁村振興公社, 348 p.
- ③ 農家營農規模適正化事業 實施要領, 農林水產部 例規 151호(1990, 10, 29 制定) 115 p.
- ④ 農業構造 再編과 地域農業과 發展 方向-農業擔當主催의 育成을 中心으로 忠南大 地域開發研究所, 1993, 380 p.
- ⑤ 프랑스 SAFER의 組織과 機能, 外國 農地 制度 資料集 4집, D-51-4, KREI, 1988, 68 p.
- ⑥ 構造改善局 關係資料, 日本農林省 構造改善局 總務課 1989, 411 p.
- 26) 農業 데이터 베이스 構築의 發展方向, 統計 대이터 베이스의 관점에서, 統合農業 情報 시스템 6, 研究報告 148, KREI, 1988, 53 p.
- 27) ① 전환기 양정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전환기, 양정개선을 위한 토론회결과보고서, D58, 1991, 5, KREI, 82 p.
- ② 農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關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방향, D87, 1993, 12, KREI, 185 p.
- ③ 각국의 農산물 거래법, 法律자료 55집, 法律처, 1972, 291 p.
- ④ 戰略的 農產物의 選擇과 生產調整方案研究, 研究報告 168, 1988, 12, 96 p.
- 28) 地方主要都市 農水產物 流通現況分析-全國圈 農水產物流通改善基本計劃을 위한 豫備調查, 1982, KREI, 281 p.
- 29) 青果物加工產業의 現況과 發展方向, 研究報告 118, 1986, 10, KREI, 179 p.
- 30) ① 2000年代를 向한 農村定住生活圈 開發基本構想(慶南固城事例研究), 1984, 7, KREI, 637 p.
- ② 農업구조개선을 위한 農촌사회정책의 方향 정립에 關한 研究, 研究보고 227, 1990, 12, KREI, 107 p.
- ③ 地方自治制와 地域農業開發, 심포지움資料, 1991, 6, 21, 韓國農業經濟學會, 127 p.
- ④ 村落 및 農家實態調查 結果, M27-2, 1991, 12, KREI, 172 p.
- ⑤ 唐津農村定住生活圈 開發計劃案 1983-1991, 1982, 12, KERI 全南 唐津郡, 81 p.
- ⑥ 臺灣과 韓國의 農村開發에 과난 比較研究, 農協大學 農協發展研究所, 1986, 76 p.
- ⑦ 農村醫療傳達體系의 問題點과 새로운 構想, 研究報告 83, 農村地域 綜合開發에 關한 研究 3, 1984, 12, KERI 207 p.
- 31) ① 農村工業과 農工地區開發의 效率的인 推進 方案, 研究報告 133, KREI, 1986, 100 p.
- ② 農工地區開發의 效率적인 推進方案, 政策討議시리즈 30, KREI, 1986, 41 p.
- ③ 農漁村工業開發效果의 調查研究

1. 農工地區開發의 效率的 推進을 위한 政策課題, C88-1-1, KREI, 1988, 179 p.
 2. 忠南公州郡長岐農工地區事例, C88-1-2, KREI, 1988, 116 p.
 3. 全北南原郡東面 農工地區事例, C88-1-3, KREI, 1988, 65 p.
 4. 全南咸平郡 鶴橋農工地區事例, C88-1-4, KREI, 1998, 104 p.
 5. 慶南密陽郡府北農工地區事例, C88-1-6, KREI, 1988, 193 p.
- ④ 農工地區開發事業의 波及效果分析 및 事後評價研究(2次 年度)
1. 江原橫城郡 墨溪農工地區事例, 研究報告 178, KERI, 1988, 107 p.
 2. 忠北鎮川郡新井農工地區事例, 研究報告 178, KREI, 1988, 85 p.
 3. 慶南咸陽郡 吏隱農工地區事例, 研究報告 178, KERI, 1988, 194 p.
- ⑤ 農工技術, 特輯 定住生活圈開發, 農漁村振興公社, 1991. 4. 農工地區開發의 方向과 政策課題, 研究報告 82, KREI, 1984, 139 p.
- 32) 農外所得源 開發事業의 評價와 發展方向, KREI, 1991, 185 p.
- 33) 農業災害保險制度樹立에 關한 公聽會, 政策討論시리즈 37, 1988. 12, KREI, 101 p.; 농림법률 해설, 농림부, 2000. 12, 62면 참조.
- 34) 김동희, 「농업·농촌기본법」 시안 검토(1998. 6. 29. 농림부 농업정책과장에 대한 의견서). “농업행정에 대한 농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상업농 시대에 범농업법적 이익을 대변, 대표할 수 있는 농업회의소를 설립발전시키기 위하여 상공회의소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토록 함.”
- 35) (中山間地域 등의 振興) ① [나라는 山間地 및 그 주변의 地域 기타의 地勢 등의 地理的條件이 나쁘고, 農業의 生產條件이 不利한 地域(이하 「中山間地域 등」이라 한다)에 있어서 신규의 작물의 導入, 地域特產物의 生產 및 판매 등을 통한 農業 기타의 產業의 振興에 의한 就業機會의 增大, 生活環境의 整備에 의한 定住의 촉진 기타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나라는 中山間地域 등에 있어서는 適切한 農業생산활동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도록 農業의 生產조건에 관한 不利를 補正하기 위한 지원을 행하는 것 등에 의하여 多面的機能의 확보를 특히 도모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36) 加藤 一郎, 農業法, 有斐閣, 1985, 405-6면; 關谷 俊作, 農林水產法, 行政, 1985, 226-229면

참고 문헌

황적인 편(1999), 農業법, 삼지원, 605 p.